

Gakkensai 부대배상책임보험 "Futaibaiseki" 가입자 안내서

A 코스

학생교육연구배상책임보험
"Gakkenbai"

B 코스

인턴쉽·교직원격활동등배상책임보험
"Intern-bai"

C 코스

의학학생교육연구배상책임보험
"Igakubai"

당신이 만일 타인에게 부상을 입히거나 타인의 재산을 파손한 경우 등에 의해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을 경우에 대비한 보험입니다. 만일의 사고에 대비 하여 반드시 읽어 주십시오.

〈가입에 대한 이해〉 학생 본인이 가입해 주십시오.

가입 연도	년	보험 기간	년	가입 코스	Ⓐ Ⓑ Ⓒ
성명					

본 보험은 학생개인에 대해 보험증권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보험증권을 대신해 이 책자를 소중히 보관하세요!



이 안내서는 일본어판을 번역한 것입니다. 일본어와 다른 표현이나 해석이 있을 경우에는 일본어를 정문으로 합니다.



가입자 여러분께

본 보험의 내용 및 [피보험자(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분)] 이신 여러분의 의무 등에 대해서는 배상책임보험보통약관 등의 각종 규정이 적용됩니다.

본 [안내서] 는 약관 및 각종 규정 가운데 특히 중요한 사항을 기재한 것입니다.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꼭 읽어 보시고, 손이 닿는 가까운 곳에 보관하십시오.

<목 차>

- I . Gakkensai부대배상책임보험의 개요 (P 2 ~ P 4)
 - 1. 본 보험의 보험기간
 - 2. 본 보험의 내용
 - 3. 본 보험의 대상이 되는 활동범위
 - 4. 보상의 대상이 되는 경우
 - 5.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 주된 경우
 - 6. 계약 내용 변경 (퇴학, 휴학, 전과, 과정변경 등) 의 경우에 따른 절차
- II . 사고 발생 시의 절차 (P 5)
 - 1. 사고발생부터 보험금지급까지
 - 2. 사고 발생 시의 절차
- III . Gakkensai부대배상책임보험에 관한 적용약관 (P 6 ~ P 16)
- IV . 중요사항설명서 (P 17)
 - 1. 계약개요
 - 2. 주의환기정보
- V . 사고의 경우는 (P 18)
- VI . 보험금 청구처 (도쿄해상일동학교보험코너) (P 19)
- VII . 기타 (P 19)

Gakkensai부대배상책임보험은 공익재단법인 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이하 '본 협회' 라고 합니다.)와 이하의 보험회사(예정)가 체결한 공동 보험계약이며, 도쿄해상일동화재보험 주식회사가 다른 인수 보험회사의 대리·대행을 실시합니다. 각 인수보험회사는 계약체결 시에 결정한 인수비율에 따라 연대하는 것이 아니라 단독별로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집니다. 또한, 인수비율에 대해서는 공익재단법인 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에 확인하십시오.

아이오이닛세이도와손보 손포재팬 도쿄해상일동(간사보험회사) 미쓰이스미토모해상

※ 가입 내용·입 확인·제반 절차 등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재학 중인 학교의 담당창구(학생과·학생지원과·보건센터 등)에 문의해 주십시오.

보험금(지급 한도액)·보험료·보험기간

학교에 따라 채용 코스가 다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학교 창구에 문의하십시오.

1. 대상 활동범위

활동내용	코스	A코스 (*1) ("Gakkenbai")	B코스 (*2) ("Intern-bai")	C코스 (*3) ("Igakubai")
인턴쉽, 개호체험활동, 교육실습, 보육실습, 불면티어 활동 및 그 왕복(*4)		○	○	○
상기 이외의 정규과정, 학교행사, 과외활동(*5) 및 그 왕복		○	×	○
의료관련실습(*6) 및 그 왕복		×	×	○

(*1) 의료 관련 실습을 제외합니다. 약학교육 실무실습을 포함합니다.

(*2) 의료 관련 실습 및 약학교육 실무실습을 제외합니다.

(*3) 의료 관련 실습을 포함합니다.

(*4) 학교가 정규과정, 학교행사 또는 과외활동(*5)으로 인정한 경우에 한합니다.

(*5) 학교 규칙에 입각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인턴쉽 또는 자원봉사 활동을 목적으로 한 조직으로 승인받은 학내 학생단체가 실시하는 인턴쉽 또는 자원봉사 활동을 말합니다. 단, 학교가 금지한 시간과 장소에서 실시되는 활동 및 금지행위는 제외합니다.

(*6) 의료 관련 학부·(학)과가 정규과정 또는 학교행사로 인정한 실습을 말합니다.

2. 보험금(지급 한도액)·보험료

		A코스	B코스	C코스
지급한도액(*1)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을 합쳐 한 사고당 1억엔 한도 (면책금액(*2) : 0엔)		
1인당 피보험자 보험료	1년간	340엔	210엔	500엔
	2년간	680엔	420엔	1,000엔
	3년간	1,020엔	630엔	1,500엔
	4년간	1,360엔	840엔	2,000엔
	5년간	1,700엔	1,050엔	2,500엔
	6년간	2,040엔	1,260엔	3,000엔

(*1) 피보험자 1인의 1년에 해당하는 지급 한도액입니다.

(*2) 면책금액이란 지급할 보험금의 계산 시 손해액에서 차감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면책금액은 피보험자의 자기부담이 됩니다.

※연도 도중에 가입하는 경우도 보험료는 1년 단위입니다.

※보험기간 중에 탈퇴한 경우 당해 연도분 보험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I. 학연재부대배상책임보험의 개요

1. 본 보험의 보험기간

보험기간은 이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합니다.

	보험적용개시 시점	보험적용종료 시점 ^(*)
4월 입학생	4월 1일 오전 0시부터	다음 해 3월 31일 오후 12시까지
9월 입학생	9월 1일 오전 0시부터	다음 해 8월 31일 오후 12시까지
10월 입학생	10월 1일 오전 0시부터	다음 해 9월 30일 오후 12시까지

단, 다음의 경우는 보험적용개시 시점은 각각 다음과 같습니다.

전원 가입 시 (학교가 학생의 가입을 결정하는 경우)로 학교 기관에서 결의 ^(**) 한 보험 가입일이 상기 보험의 개시 시점 이후일 경우.	의결된 보험가입일의 오전 0시가 보험적용개시 시점
입의 가입 시 (학생이 가입을 결정하는 경우)로 학생이 재적한 회원 학교에 소정의 보험료를 납부한 날이 상기 보험의 개시 시점 이후일 경우. ^(***)	신청일의 다음 날 오전 0시가 보험적용개시 시점

(*) 1년간으로 가입한 경우입니다. 다년 가입의 경우는 그 기간이 종료하는 연도의 각 중기까지입니다.

(**) 보험 가입일자는 가입된 날로부터 소급되지 않습니다.

(***) 원칙상 입학절차와 동시에 신청하는 것으로 합니다.

자신의 보험기간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학교의 담당장구 (학생과·학생지원과·보건센터 등)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2. 본 보험의 내용

일본 국내외에서 학생 (피보험자)이 정규과정, 학교행사, 과외활동^(*) 또는 그 왕복 중에 타인에게 부상을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파손한 경우 등에 의해 법률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인해 입게 되는 손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학교 규칙에 입각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인턴쉽 또는 자원봉사 활동을 목적으로 한 조직으로 승인받은 학내 학생단체가 실시하는 인턴쉽 또는 자원봉사 활동을 말합니다. 단, 학교가 금지한 시간과 장소에서 실시되는 활동 및 금지행위는 제외합니다.

3. 본 보험의 대상이 되는 활동범위

● A코스 (의료관련실습을 제외·약학교육실무실습을 포함한다.)

정규과정, 학교행사, 과외활동 (상기의 *1) 및 그 왕복 (B코스의 활동범위를 포함).

● B코스 (의료관련실습, 약학교육실무실습을 제외한다.)

인턴쉽, 개호체험활동, 교육실습, 보육실습, 자원봉사활동 및 그 왕복. 단, 학교가 상기 활동을 정규과정, 학교행사 또는 과외활동 (상기의 *1)으로 인정한 경우에 한합니다.

● C코스 (의료관련실습을 포함한다.)

의료 관련 학부·학과의 정규과정, 학교행사, 과외활동 (상기의 *1) 및 그 왕복 (A코스 및 B코스의 활동범위를 포함).

※의료관련실습 (C 코스에서 보상)·약학교육실무실습 (A·C 코스에서 보상)에 대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것에 한하여 대상이 됩니다.

① 학교가 정규과정 또는 학교행사로서 인정하는 실습일 것

② 피보험자가 그 전문자격에 관한 행위를 업무 (아르바이트 기타 통상적으로 행하는 것을 포함합니다)로서 행하지 않을 것. 그리고

③ 상기 ①②에 대해서 보험청구 시 학교에서 증명을 받을 것. 이상의 요건을 충족한 것에 한하여 대상이 됩니다. 자세한 것은 학교의 담당장구 (학생과·학생지원과·보건센터 등)로 문의해 주십시오

(주의)

· A 코스 (학연배)·C 코스 (의학배)의 대상범위에는 B 코스 (인턴배)의 대상범위가 포함되므로, A 코스 (학연배)·C 코스 (의학배)에 가입한 학생은 B 코스 (인턴배)에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 클럽활동^(**) 중의 사고는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단, 정규수업 또는 학교행사에 맞추어 그 날의 클럽활동 (학교가 금지하고 있는 것 등은 제외합니다.)에 참가하는 경우, 그 주거와 활동장소가 되는 시설 사이를 합리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해 이동 중에 행한 행위는 대상이 되는 활동에 포함합니다.

(**2) 「클럽활동」이란 학교의 규칙에 입각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은 학내 학생단체가 실시하는 문화활동 또는 체육활동을 말합니다. 단, 과외활동 (상기의 *1) 및 학교가 금지한 시간 또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및 금지행위를 제외합니다.

4. 보상의 대상이 되는 경우

※본 배상책임보험은 시설배상책임보험·생산물배상책임보험·수탁자배상책임보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다음에 열거하는 사유로 인해 보험 기간 중 타인의 신체에 장애 (장애로 인한 사망을 포함됩니다. 이하 동일합니다)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손괴 (멸실, 파손 또는 오손)시킨 것으로 인해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경우^(*).

가. 상기 '3. 대상이 되는 활동범위'에 정하는 활동 (이하 '활동')의 수행에 기인해 활동 중에 발생한 우연한 사고 (시설배상책임보험)나. 활동의 결과에 기인해 그 활동이 끝난 후에 발생한 사고 및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난 음식물과 정규과정, 학교행사, 과외활동 (상기의 *1)의 성과물 (약제를 포함합니다.)로 인한 사고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2) 활동중인 피보험자가 사용 또는 관리하는 타인의 재물 (이하 [수탁물]이라고 합니다.)을 보험기간중에 멸실, 파손, 오손 혹은 분실, 또는 도난 혹은 사취당함으로써 수탁물에 대해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자에게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경우. (수탁자 배상책임보험)

(*) 1) 스포츠 중에 결과적으로 상대방에게 부상을 입힌 경우, 그 원인이 경기 규칙상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내의 행위에 대해서는 통

상 위법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가해자는 법률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지급하는 보험금의 종류〉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다음의 배상금이나 비용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배상책임 승인·배상금액 결정에는 인수 보험회사의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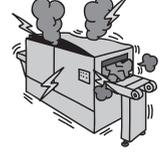
- ① ①피해자에 대해 지급 책임을 지는 법률상 손해배상금
- ② 인수보험회사의 서면 동의를 얻어 지출한 변호사비용 등의 정소비용
- ③ 타인에게서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의 보전·행사 또는 이미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의 발생·확대의 방지를 위해, 인수보험회사의 서면동의를 얻어 지출할 필요가 있는 비용이나 유익한 비용
- ④ 타인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의 보전 또는 행사에 대해 필요한 수속을 하고, 또는 이미 발생한 사고와 관련된 손해의 발생 혹은 확대 방지를 위해 필요한 수단을 강구한 후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에 응급처치, 호송, 기타 긴급조치에 소요된 비용 또는 인수보험회사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지출한 기타 비용
- ⑤ 인수보험회사가 피보험자를 대신해 손해배상청구의 해결을 맡을 경우에, 인수보험회사의 요구에 따른 협력을 위해 지출한 비용

〈보험금의 지출 방법〉

상기 ①의 손해배상금에 대해서는 그 금액에 대해 지급 한도액(수탁자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수탁물의 시가)을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상기 ②~⑤의 비용에 대해서는 원칙상 그 금액이 보험금의 지급대상이 됩니다. 단 ②의 정소비용에 대해서는 ① 손해배상금액이 지급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급한도액÷①손해배상금」의 비율에 따라 삭감하고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상의 대상이 되는 사고 예〉

모두 피보험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에 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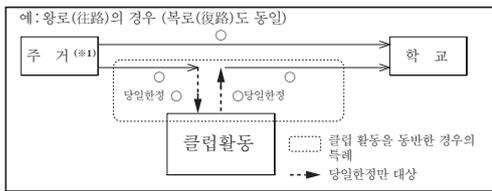
<p>●정규과정 화학 실험 중 실수로 약품을 섞어 폭발사고가 나 다른 학생이 화상을 입었다.(A, C코스 대상)</p> 	<p>●학교축제에서 간이 닭꼬치집을 냈는데 식중독 사고를 일으켜 5명이 입원했다.(A, C코스 대상)</p> 	<p>●정규과정 인턴십 활동 중 파견 회사의 기계를 실수로 망가뜨렸다.(A, B, C코스 대상)</p>  <p style="text-align: right;">(*2)</p>	<p>●수업을 받기 위해 자전거로 통학하던 중에 자전거 핸들이 보행자 가방에 걸리면서 보행자가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A, C코스 대상)</p> 
---	---	--	---

(*2) 컴퓨터 내 데이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등의 파손으로 인한 손해는 부대배상책임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용어해설

· 왕복이란...

활동에의 참가목적으로 피보험자의 주거(*3)와 그 활동장소가 되는 시설 간 또는 활동장소가 복수의 시설에 걸쳐있는 경우는 그 시설 간을 합리적인 경로 및 방법(학교가 금지한 방법을 제외합니다.)에 의해 이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칙상, 경로를 일탈한 경우(수업 등의 참가와는 관계없는 목적으로 합리적인 경로를 벗어난 경우)나 왕복·이동을 중단한 경우(왕복·이동과는 관계없는 행위를 도중에 행하는 경우)에는, 그동안이나 그 후에 입은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단, 일탈·중단이 수업 등, 학교행사 혹은 과외활동에 필요한 물품의 구입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를 행하기 위한 것인 경우, 또는 일상생활상 필요한 행위를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인해 행하는 최소한도의 것일 경우에는, 합리적 경로에 복귀한 후에 입은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이하와 같은 행위입니다.



① 수업에 필요한 교과서를 구입하다. ② 반찬 등을 구입하다. ③ 혼자서 생활하는 학생이 식당에 들르다. ④ 선거의 투표를 하다. ⑤ 병원이나 진료소에 진찰을 받다. 단, 정규수업 또는 학교행사에 맞추어 그날의 클럽활동(학교가 금지하고 있는 활동 등은 제외합니다.)에 참가하는 경우, 그 주거(*3)와 활동장소가 되는 시설 사이를 합리적인 경로·방법으로 이동 중인 경우도 왕복에 포함합니다. (단, 해당클럽활동 중의 사고는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3) 사회인 입시(*4)를 거쳐 학교에 입학한 학생에 한해, 근무처와 학교시설 등 간의 왕복을 포함합니다.

(*4) 「사회인 입시」란...일반 입학지원자와 다른 방법으로 평가하는입시전형으로 사회인 특별선발시험 등의 사회인을 대상으로 하는 입시를 말합니다.

· 인턴십이란

학생이 재학 중에 자신의 전공이나 장래의 커리어에 관계된 기업 등에 참가하는 취업체험을 말합니다.

· 개호체험활동

초등학교 및 중학교 교원 보통면허 취득 희망 학생이 행하는 개호 등의 체험활동을 말합니다.

· 교육실습이란

「교육실습」에 해당하는 과목에서 학생이 교원면허 취득을 위해 교육실습기관인 유치원·초등학교·고등학교에서 행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특별지원학교 교원면허 취득에 관한 「심신에 장애를 가진 유아, 아동 또는 생도에 대한 교육실습」 및 양호교원면허 취득에 관한 「양호실습」을 포함합니다.

· 보육실습이란

아동복지법 및 동시행규칙에 규정된 후생노동대신이 정하는 수업 교과목 중 「보육실습」에 해당하는 과목에서, 학생이 보육사자격 취득을 위해 보육실습기관인 보육소 등의 실습시설에서 행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 불런티어 활동이란

각자 자유 의지에 따라 개인이 가진 능력, 노력 또는 재산으로 사회에 공헌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 의료관련실습이란

학교의 의료관련학부·(학)과가 정규과정 또는 학교행사로 인정하고 행하는 실습을 말합니다..

· 약학교육실무실습이란

학교의 약학부 및 이와 유사한 학부·(학)과가 정규과정 또는 학교행사로 인정하고 행하는 실습을 말합니다.

5.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 주된 경우

자세한 사항은 안내서 뒷부분에 있는 약관 등 기재 내용 (P6 ~ P16) 을 참고하십시오..

<공통>

- 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
 - ② 전쟁, 변란, 폭동, 소요, 노동쟁의
 - ③ 지진, 분화, 홍수, 쓰나미 또는 높은 파도
 - ④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특별 약정이 있는 경우에 그 약정에 의해 가중된 배상책임
 - ⑤ 배수, 배기에 기인한 배상책임
 - ⑥ 핵연료물질, 핵원료물질, 방사성원소,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유해한 특성 작용 또는 이러한 특성에 기인하는 손해. 단, 의학적 또는 산업적으로 이용되는 방사성동위원소의 사용, 저장 또는 운반 중에 발생한 원자핵 반응, 원자핵의 붕괴 및 분열로 인한 손해로 법령 위반이 없었던 경우는 제외합니다.
 - ⑦ 피보험자가 행하는 다음의 행위에 기인하는 손해 (*1)
 - 의료행위 및 인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가운데 의사 · 치과의사 · 간호사 · 보건사 · 조산사 이외의 사람이 행하는 것이 법령에 의해 금지되어 있는 행위
 - 약품의 조제, 투여, 판매, 공급
 - 안마 마사지 지압사, 침술사, 뜸치료사, 유도접골사, 건축사, 토지가옥조사원, 기술사, 측량사, 수의사 이외의 자가 행하는 것을 금지한 행위 등
- (* 1) 단, C코스에서 의료관련 실습으로 소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이 사유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A 및 C코스에서 약학교육 실무실습으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상기 가운데 「약품의 제조·투여·판매·공급」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설배상책임보험>

- ① 자동차 (*2), 모터사이클 (배기량 50cc 이하), 항공기, 승강기 또는 시설 밖의 배·차량 (원동력이 오직 인력인 것은 제외합니다.) 혹은 동물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에 기인하는 손해
 - ② 오염물질의 배출·유출·일출 또는 누출에 기인하는 손해 및 오염정화 비용 (단, 오염물질의 배출 등이 예측불가하고 돌발적이며 급격하고, 소정의 기간내에 피보험자가 발견하여 인수보험회사에 소정의 기간내에 통지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 ③ 석면, 석면의 대체물질등의 발암성 기타 유해한 특성에 기인한 손해 등
- (* 2) 자동차 (오토바이) 을 포함

<시설배상책임보험>

- 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해 법령에 위반하여 제조, 판매, 제공한 생산물로 기인한 손해
- ② 생산물 자체의 손괴 또는 사용불능에 관한 배상책임
- ③ 일본 국내에서 발생한 사고가 일본 국의 재판소에 제소된 손해배상청구소송
- ④ 오염물질의 배출·유출·일출 또는 누출에 기인하는 손해 및 오염정화 비용 (단, 오염물질의 배출 등이 예측불가하고 돌발적이며 급격하고, 소정의 기간내에 피보험자가 발견하여 인수보험회사에 소정의 기간내에 통지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 ⑤ 석면, 석면의 대체물질 등의 발암성 기타 유해한 특성에 기인한 손해 등

<수탁자배상책임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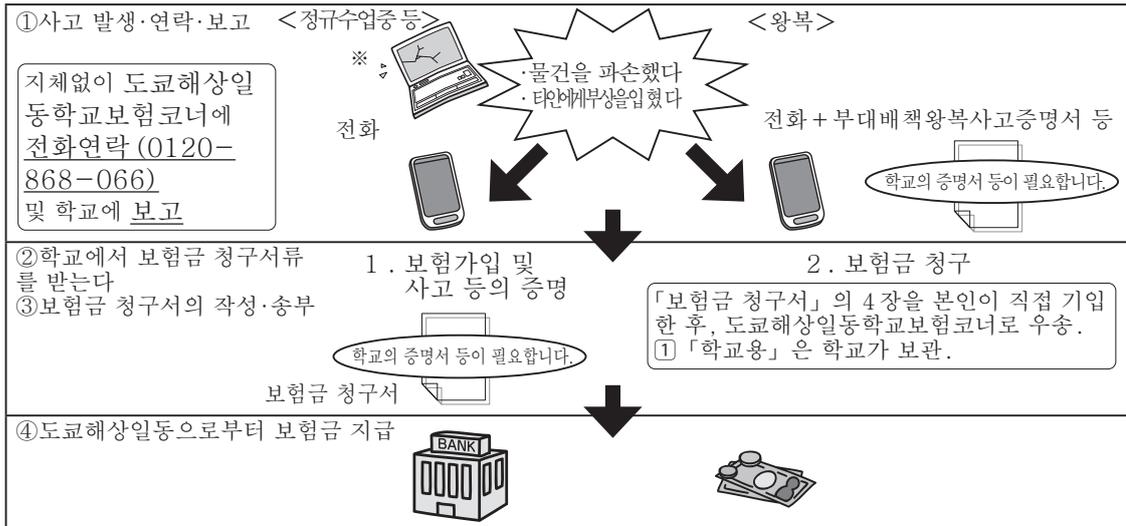
- ① 자연발화 또는 자연폭발한 수탁물 자체의 손괴
- ② 수탁자가 기탁자에게 양도한 후 발견된 사고
- ③ 자전거, 오토바이, 모터사이클 (배기량 50cc 이하), 자동차, 항공기, 선박, 차량, 동물, 악기, 지폐, 유가증권, 인지, 우표, 증서, 장부, 보석, 귀금속, 미술품, 골동품, 훈장, 기장, 원고본, 설계서, 모형 기타 이러한 류에 해당하는 수탁물의 손괴, 분실 또는 도난, 사취
- ④ 건물 외부에서 내부로 비, 눈, 우박, 진눈깨비 또는 싸락눈의 침입 또는 불어들어옴으로써 발생한 손해
- ⑤ 급배수관, 난방장장치, 습도조절장치, 소화전, 업무용 혹은 가사용 기구로부터 증기 혹은 물의 누출 혹은 일출, 또는 스프링클러로부터 내용물의 누출 혹은 일출에 의한 손해
- ⑥ 수탁물의 사용불능에 기인하는 손해 등

6. 계약 내용 변경 (퇴학, 휴학, 전과, 과정변경 등) 의 경우에 따른 절차

- (1) 가입 후,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학교 담당창구에 통지하여 주십시오. 2년 이상 기간의 보험료분담금을 합쳐 대학에 납부한 분이 다음에 해당할 경우는, 미경과기간 (1년 미만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에 대한 보험료가 반환될 경우가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학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학교 담당창구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 ① 퇴학하는 경우
 - ② 보험기간중에 통산하여 1년 이상 휴학 (유학을 포함합니다.) 한 경우
 - ③ 학부, 학과 등을 변경하는 경우
 - ④ 가입 코스를 변경하는 경우현재 가입 중인 코스의 나머지 기간을 일단 해약하고 변경 후 코스에 연 단위로 가입합니다. 현재 코스의 반환 보험료를 변경 후 코스의 가입 보험료로 상쇄할 수는 없습니다.
- (2) 휴학, 유년 등의 이유로 소정의 수업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당초의 가입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연장기간분에 따른 새로운 가입 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학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학교 담당창구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II. 사고 발생 시의 절차

1. 사고발생부터 보험금지급까지



2. 사고 발생 시의 절차

- (1) 본 보험의 대상이 된다고 여겨지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도쿄해상일동의 학교보험코너 ☎0120-868-066 (수신자 부담 전화) 으로 아는 범위내에서 다음의 내용을 알려주십시오.
- 자신의 성명, 연령, 재적 학교명 · 사고 발생일, 시각
 - 사고 발생 장소 · 피해자의 성명, 연령
 - 사고 원인 · 피해 (상해, 손괴 등) 의 정도

일본국외에서의 사고의 경우에도 전화로 연락주십시오. 또한, 이 경우는 수신자 부담 전화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학생 본인이 연락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일본국내의 대리인을 통해서 연락주십시오.

연락이 지체되는 경우에는 보험금이 감액되어 지급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금의 청구권에는 시효(3년)가 있으므로 주의하십시오. 또한 사고를 일으켰다는 사실 및 도쿄해상일동 학교보험코너에 상기의 내용을 알렸다는 사실을 학교의 담당장구(학생과, 학생지원과, 보건센터 등)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등에 대해서는 가해자인 학생 본인(미성년일 경우는 친권자)가 행하게 됩니다.

- (2) 학교의 담당장구에서 아래의 서류를 받아 필요사항을 기입한 후에 필요한 증명을 받아 주십시오.
- ① 보험금청구서(겸 사고증명서)
 - ② 부대배상왕복사고증명서(왕복중 사고의 경우)
- (3) 도쿄해상일동의 학교보험코너에 전기 2 ①②의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 학생(피보험자)이 미성년자인 경우, 보험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친권자가 하는 것으로 합니다.
- (4) 보험회사는 보험금의 지급을 행합니다(후술의 <보험금 청구시의 주의>참조.).

(중요)
 보험금 지급 후에 인수보험회사는 본 협회에 보험금지급 연락을 하고, 본 협회는 그것을 기초로 보험금지급 보고서를 학교에 송부하여 인수보험회사, 학교 및 본 협회의 3자가 해당 사고의 보험금지급 상황 등의 정보를 공유하므로 미리 양지해 주십시오.

※ 배상금은 피해자의 과실비율이나 다른 사람의 책임비율 등을 감안하여 결정됩니다. 협의조정교섭은 가해자인 피보험자 자신이 행하는 것입니다만, 배상사고는 일반적으로 가해자의 일방적인 과실에 의한 것은 적고, 피해자 자신에게도 과실이 있거나 불가항력에 의한 것이 많으므로 협의조정에 관해서는 사전에 보험회사와 충분히 상담하십시오.

<협의조정교섭 서비스에 대해>

협의조정교섭 서비스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본 보험에는 보험회사가 피해자와의 협의조정교섭을 행하는 [협의조정교섭 서비스] 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 보험이 적용된다고 생각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담당부서의 조언을 토대로 가입자(피보험자) 자신이 피해자와 협의조정교섭을 진행하는 것이므로 사전에 양해하여 주십시오. 또한 인수보험회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배상책임을 승인하거나 배상금액을 결정한 경우에는, 배상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험금으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하십시오.

<보험금 청구 시 주의>

책임보험에 있어,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진 보험사고의 피해자는 피보험자가 인수보험회사에 대해 가지는 보험금 청구권(비용 보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합니다.)에 대해 선취특권을 가집니다.(보험법 제22조 제1항). [선취 특권]이란 피해자가 보험금 지급에서 다른 채권자에 앞서 자기의 채권의 변제를 받는 권리를 말합니다.

피보험자는 피해자에게 변제할 금액 또는 피해자의 승낙을 받은 금액의 한도에 대해서만 인수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보험법 제22조 제2항).

이를 위해, 피보험자에게 청구를 받은 인수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은 비용 보험금을 제외하고, 다음의 ①에서 ③까지의 경우에 한하므로 이해 바랍니다.

-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해 이미 손해배상으로서 변제를 행한 경우
- ② 피해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승낙했다는 것이 확인 가능한 경우
- ③ 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라 인수보험회사에서 피해자에 대해 직접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타 보험계약 등이 있는 경우>

본 보험계약과 중복되는 보험계약이나 공제계약(이하 [타 보험계약 등] 이라 합니다.)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① 다른 보험계약 등으로부터 보험금이나 공제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다른 보험계약 등과는 관계없이 본 보험계약 가입내용에 의거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다른 보험계약 등으로부터 보험금이나 공제금이 지급된 경우: 손해액에서 이미 다른 보험계약 등에서 지급된 보험금이나 공제금을 차감한 잔액에 대해 본 보험계약 가입내용에 의거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III. Gakkensai 부대배상책임보험에 관한 적용약관

배상책임보험 보통보험 약관

제 1 조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 회사는, 피보험자가 타인의 신체의 장애 또는 재물의 손괴(이하 [사고] 라고 합니다.) 에 대해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 (이하 [보험사고] 라고 합니다.) 으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 2 조 (손해의 범위)

당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전 조에서의 손해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합니다.

- ①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법률의 규정에 기초하여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해 행하는 배상채무의 변제로서의 지출을 말합니다. 피보험자가 변제에 의해 대위취득하는 것이 있는 경우는 그 가격을 공제합니다.
- ② 정소비용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정소에 대해 피보험자가 당 회사의 서면 동의를 얻어 지출한 비용을 말합니다.
- ③ 손해방지 경감비용
제 12 조 (사고의 발생) (1) ③의 규정에 기초하여 피보험자가 타인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의 보전이나 행사에 대해 필요한 절차를 행하거나 이미 발생한 사고에 관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 방지에 필요한 기타 수단을 강구한 경우 (④에 규정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에, 피보험자가 그 절차나 수단을 위해 당 회사의 서면 동의를 얻어 지출할 필요가 있는 비용이나 유익한 비용을 말합니다.
- ④ 긴급조치 비용
제 12 조 (1) ③의 규정에 기초하여 피보험자가 필요한 절차를 행하거나 수단을 강구한 후에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이 판명되었을 경우에, 피보험자가 지출한 응급수당, 호송 기타 긴급조치에 요하는 비용 또는 당 회사의 서면 동의를 얻어
- ⑤ 협력 비용
제 13 조 (손해배상 청구해결을 위해 협력) (1) 의 규정에 의거 당 회사가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의 해결을 맡은 경우에, 피보험자가 당 회사의 요구에 따라 협력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말합니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다음 용어의 의미는 각각 다음의 정의에 따릅니다.

용 어	정 의
신체의 장애	사람의 상해 및 병원 그리고 이러한 것에 기인한 후유장애 및 사망을 말합니다.
재물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을 말합니다. [유체물]이란 유형적 존재를 가진 고체, 액체 또는 기체를 말하며, 데이터, 소프트웨어 혹은 프로그램 등의 무체물, 어업권, 특허권 또는 저작권 그밖의 권리나 전기 또는 에너지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손괴	멸실, 파손 또는 오손을 말합니다. [멸실]이란, 재물이 그 물리적인 존재를 잃는 것을 말하며, 분실, 절취, 사취 및 횡령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파손]이란 재물이 예정 또는 의도된 물리적, 화학적 혹은 생물학적인 변화에 의해 그 객관적인 경제적 가치를 감소시킨 것을 말합니다. [오손]이란, 재물이 예정 또는 의도되지 않은 사유에 의해 오염된 것으로 인해 그 객관적인 경제적 가치가 감소된 것을 말합니다.
매출액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판매나 제공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세금포함 대가의 총액을 말합니다.
완성공사 매출량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완성된 공사에 관한 세금포함 수익의 총액을 말합니다.
임금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노동의 대가로 피고용자에게 지급하는 세금포함 금액의 총액을 말합니다.
입장객	보험기간 중에 시설에 입장하는 이용자의 총수를 말합니다.
타 보험계약 등	제 1 조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의 손해를 보상하는 타 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을 말합니다.

제 4 조 (책임의 한도)

- (1) 당 회사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에 대해서는 1 회의 사고 당 그 금액이 보험증권상에 기재된 면책금액을 초과할 경우에 한해, 그 초과액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단, 당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지급한도액 (이하 [지급한도액] 이라 말합니다.) 을 한도로 합니다.
- (2) 당 회사는, 정소비용에 대해서는 그 전액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합니

다. 단, 법률상의 손해배상금액이 지급한도액을 초과한 경우는 다음의 산식에 의해 산출된 금액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text{보험금액} = \text{정소비용액} \times \frac{\text{지급한도액}}{\text{법률상의 손해배상금액}}$$

- (3) 당 회사는 손해방지 경감비용, 긴급조치비용 및 협력비용에 대해서는 전액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 5 조 (보험책임의 적용시작시기 및 종료시기)

- (1) 당 회사의 보험책임은 보험증권 기재상의 보험기간 (이하 [보험기간] 이라 합니다.) 의 초일 오후 4 시 (보험증권에 이와 상이한 시각이 기재된 경우는 그 시각) 에 시작하고, 말일 오후 4 시에 종료합니다.
- (2) (1) 의 시각은 일본국의 표준시에 따르는 것으로 합니다.
- (3) 보험기간이 시작된 이후라 하더라도 당 회사는 보험료 영수 전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 6 조 (고지 의무)

- (1)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되는 자는 보험계약체결 시, 위험 (손해의 발생 가능성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에 관한 중요한 사항 중, 보험계약신청서 기타 서류의 기재사항에 의해 당 회사가 고지를 요청하는 것 (타 보험계약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이하 [고지사항] 이라 합니다.) 에 대해서는 당 회사에 사실을 정확하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2)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지사항에 대해 고의 혹은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을 경우 또는 사실과 다른 것을 통보한 경우에 당 회사는 보험계약자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본 보험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 (3) (2) 의 규정은, 다음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① (2) 의 사실이 없어진 경우
 - ② 당 회사가 보험계약 체결 시, (2) 에 규정한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경우나 과실에 의해 이를 알리지 않았을 경우 (당 회사를 위해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가 사실을 알리는 것을 방해했거나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 또는 사실과 다른 것을 알릴 것을 권장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③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사고로 인한 손해 발생 이전의 고지사항에 대해 서면을 통해 당 회사에 정정 신청을 하고, 당 회사가 이를 승인한 경우. 또한, 당 회사는 정정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정정을 신청한 사실이 보험계약체결 시에 당 회사에 통보되었다 하더라도 당 회사가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이를 인정하는 것으로 합니다.
 - ④ 당 회사가 (2) 의 규정에 의거 해제의 원인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부터 1 개월이 경과한 경우 또는 보험계약체결 시부터 5 년을 경과한 경우
- (4) (2) 의 규정에 의거한 해제가 사고로 인한 손해 발생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당 회사는 제 19 조 (보험계약 해제의 효력) 의 규정에 관계없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이미 보험금이 지급되었을 경우 당 회사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5) (4) 의 규정은, (2) 에서 규정하는 사실에 관계없이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 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당 회사는 직간접에 관계없이 다음 사유에 기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 ② 전쟁 (선전의 유무를 묻지 않습니다.), 변란, 폭동, 소요 또는 노동쟁의
- ③ 지진, 분화, 홍수, 쓰나미 또는 높은 파도

제 8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당 회사는 특약을 부대한 경우를 제외하고, 직간접에 관계없이 피보험자가 다음의 배상책임을 지는 것으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손해 배상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있을 경우 그 약정에 의해 가중된 배상 책임
- ②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의 손괴에 대해, 그 재물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소유한 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배상 책임
- ③ 피보험자와 동거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 ④ 피보험자의 사용인이 피보험자가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에 입은 신체의 장애로 인한 배상책임
- ⑤ 배수 또는 배기 (연기를 포함합니다.) 에 기인한 배상책임

제 9 조 (조사)

- (1) 피보험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항상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으로 합니다.
- (2) 당 회사는, 보험 기간 동안 언제든지 (1) 의 예방 조치의 상황을 조사하고, 아울러 그 미비점에 대한 개선을 피보험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 10 조 (통지의무)

- (1) 보험계약 체결 후, 고지사항의 내용에 변경을 발생시킨 사실 (고지사항 중, 보험계약 체결시 당 회사가 교부하는 서면 등에 그 조항의 적용 사항으로 정한 것에 관한 사실에 한합니다.) 이 발생한 경우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당 회사에 통지해야만 합니다. 단, 그 사실이 없어졌을 경우는 당 회사에 통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 (2) (1)의 사실의 발생으로 위험 증가 (고지사항에 대해 위험이 증가하고, 본 보험계약에서 정해진 보험료가 그 위험을 계산한 기초로서 산출된 보험료에 부족한 상황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해 지체없이 (1)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않았을 때, 당 회사는 보험계약자에 대해 서면 통지로서 본 보험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 (3) (2)의 규정은, 당 회사가 (2)의 규정에 의거 해제의 원인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부터 1개월을 경과한 경우 혹은 위험증가가 발생한 때부터 5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4) (2)의 규정에 의거한 해제가 사고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후에 이루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해제에 관한 위험증가가 발생한 때부터 해제되기까지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제 19 조 (보험계약 해제의 효력)의 규정에 관계없이 당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보험금을 이미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 당 회사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5) (4)의 규정은 그 위험증가를 초래한 사실에 관계없이 발생한 사고에 따른 손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6) (2)의 규정에 관계없이, (1)의 사실의 발생으로 위험증가가 생기고, 본 보험계약의 인수범위 (보험료를 증액하는 것으로 보험계약을 지속하는 것이 가능한 범위로서 보험계약을 체결할 시 당 회사가 교부한 서면으로 정한 것을 말합니다.)를 초과하였을 경우에 당 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서면 통지로서 본 보험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7) (6)의 규정에 의거 사고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후에 해제가 이루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해제에 관련한 위험증가가 생긴 때부터 해제되기까지 발생한 사고에 의한 손해에 대해서는 제 19 조의 규정에 관계없이 당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이미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 당 회사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 11 조 (보험계약자의 주소변경)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 기재상의 주소 또는 연락처를 변경한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당 회사에 통지해야만 합니다.

제 12 조 (사고의 발생)

- (1) 보험사고 또는 그 원인이 되는 우연한 사고가 발생했음을 보험계약자 혹은 피보험자가 알았을 경우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다음의 ①에서 ⑤까지의 모든 사항을 이행해야만 합니다.
 - ① 사고발생의 일시·장소, 피해자의 주소·성명, 사고의 상황 및 이러한 사항의 증인이 되는 자가 있는 경우는 그 주소·성명을,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는 그 내용을 지체없이 당 회사에 서면 통지할 것
 - ② 타 보험계약 등의 유무 및 내용 (이미 타 보험계약 등에서 보험금 또는 공제금의 지급을 받았을 경우는 그 사실을 포함합니다.)을 지체없이 당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할 것.
 - ③ 타인에게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그 권리의 보전 또는 행사에 대해 필요한 절차를 밟을 것 그리고 이미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혹은 확대 방지를 위해 필요한 기타의 일체 수단을 강구할 것.
 - ④ 사전에 당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하지 말 것. 단, 응급수당, 호송 기타 긴급 조치에 대해서는 당 회사의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 ⑤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기소하려고 하는 경우 또는 기소된 경우는, 즉시 그 취지를 당 회사에 통지할 것.
-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1)에 규정하는 정의에 위반했을 경우, 당 회사는 제 1 조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손해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차감하고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① (1) ①, ② 또는 ⑤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했을 때, 그로 인해 당 회사가 입은 손해액
 - ② (1) ③에 규정한 의무에 위반했을 때,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를 방지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는 금액
 - ③ (1) ④에 규정하는 의무에 위반했을 때, 피보험자에게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제 13 조 (손해배상 청구 해결을 위한 협력)

- (1) 당 회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자기 비용으로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 해결을 맡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보험자는 당 회사의 요구에 응하고 그 수행에 대해 당 회사에 협력

해야만 합니다.

- (2)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1)의 협력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는, 당 회사는 그로 인해 당 회사가 입은 손해액을 차감하고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 14 조 (보험료의 정산)

- (1) 보험료가 매출액, 완성공사매출액, 임금 또는 입장객 등에 대한 비율로 정해지는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종료 후 지체없이 보험료를 확정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당 회사에 제출하여야만 합니다.
- (2) 당 회사는, 보험기간 중 그리고 보험계약 종료 후 1년간에 한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서류 중 보험료를 산출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 (3) (1) 및 (2)의 서류에 기초하여 산출한 보험료 (보험증권 기재상의 최저보험료에 달하지 않는 경우는 최저보험료로 합니다.)와 당 회사가 이미 영수한 보험료 사이에 과부족이 있을 경우는 당 회사는 지체없이 그 차액을 보험계약자에게 청구하거나 반환합니다.

제 15 조 (보험계약의 유무)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불법 취득할 목적 또는 제 3자에게 보험금을 불법으로 취득시킬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제 16 조 (보험계약의 취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의한 사기 혹은 강요에 의해 당 회사가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 회사는, 보험계약자에 대해 서면 통지하고 본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보험계약자에 의한 보험계약의 해제)

보험계약자는 당 회사에 서면 통지하고 본 보험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제 18 조 (중대사유에 의한 해제)

- (1) 당 회사는 다음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을 경우는 보험계약자에게 서면 통지로서 본 보험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당 회사에 본 보험계약에 기초한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손해를 발생시키거나 발생시키려고 한 것.
 - ② 피보험자가 본 보험계약에 기초한 보험금 청구에 대해 사기를 행하거나 하려고 한 것.
 - ③ 보험 계약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것.
 - 가. 반사회적 세력 (폭력단, 폭력단원, 폭력단 준구성원, 폭력단 관련기업, 기타 반사회적 세력을 말합니다. 또한, 폭력단 원에는 폭력단원으로서 사망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도 포함됩니다. 이하 동일합니다)에 해당됨이 인정될 것.
 - 나. 반사회적 세력에 대해 자금 등을 제공, 또는 편의를 제공하는 등 관여한 사실이 인정될 것.
 - 다. 반사회적 세력에 부당하게 이용한 사실이 인정될 것.
 - 라. 법인인 경우, 반사회적 세력이 그 법인의 경영을 지배, 또는 그 법인의 경영에 실질적 관여를 한 사실이 인정될 것.
 - 마. 기타 반사회적 세력과 사회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실이 인정될 것.
 - ④ ①에서 ③까지에 열거한 사항 외에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①에서 ③까지의 사유가 있는 경우와 같은 정도로 당 회사의 신뢰를 상실하여 본 보험 계약의 존속이 곤란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2) 본 회사는 피보험자가 (1) ③ 가에서 마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보험 계약자에 대한 서면에 의한 통지를 근거로, 본 보험 계약 (피보험자가 복수인 경우 해당 보험자에 관한 부분)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 (3) (1) 또는 (2) 규정에 의한 해지가 사고에 의한 손해 발생 후인 경우에도 (1) ①에서 ④까지의 사유 혹은 (2)의 해지 원인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해지가 성립할 때까지 발생한 사고에 의한 손해에 대해서는 다음의 규정에 상관없이 당 회사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미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당 회사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4)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1) ③ 가에서 마 중 하나에 해당되어 (1) 또는 (2) 규정에 의해 해지된 경우는, (3) 규정은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① (1) ③ 가에서 마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손해
 - ② (1) ③ 가에서 마 중 하나에 해당되는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법률상 손해배상금의 손해

제 19 조 (보험계약 해제의 효력)

보험계약의 해제는, 미래에 대해서만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 20 조 (보험료 반환 또는 청구 - 고지의무·통지의무 등의 경우)

- (1) 제 6 조 (고지의무) (1)에 의해 통보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있어서, 보험료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당 회사는 변경 전의 보험료율과 변경 후의 보험료율 차에 기초하여 계산한 보험료를 반환 또는 청구합니다.

- (2) 제 10 조 (통지의무) (2) 의 위험증가가 발생했을 경우 또는 위험이 감소했을 경우, 보험료율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당 회사는 변경 전의 보험료율과 변경 후의 보험료율의 차에 기초하여 미경과기간 (위험의 증가 또는 위험의 감소가 발생한 시점 이후의 기간을 말합니다.) 에 대해 하루 단위로 계산한 보험료를 반환 또는 청구합니다.
- (3) 보험계약자가 (1) 또는 (2) 의 규정에 의한 추가보험료의 지급을 게을리했을 경우 (당 회사가 보험계약자에 대해 추가보험료를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당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 한합니다.) 당 회사는 보험계약자에 대해 서면 통지로서 본 보험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4) (1) 또는 (2) 의 규정에 의한 추가보험료를 청구할 경우에, (3) 의 규정에 따라 당 회사가 본 보험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때는, 당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보험금을 이미 지급했을 때는 당 회사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5) (4) 의 규정은, 위험증가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 위험증가의 발생 이전에 발생한 사고에 따른 손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6) (1) 및 (2) 에 규정한 경우 외에,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계약자가 서면으로 보험계약 조건의 변경을 당 회사에 통지하고 승인을 청구하여 당 회사가 이를 승인할 경우, 보험료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시에 당 회사는 변경 전의 보험료와 변경 후의 보험료의 차에 기초하여 계산하고, 미경과기간 (조건을 변경하는 때 이후의 기간을 말합니다.) 에 대한 보험료를 반환 또는 청구합니다.
- (7) (6) 의 규정에 의거 당 회사가 추가보험료를 청구했을 경우, 보험계약자가 그 지급을 게을리했을 때는, 당 회사는 추가보험료 영수전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조건의 변경 승인의 청구가 없었다고 간주하고, 본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통보험약관 및 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 21 조 (보험료의 반환 - 무효 또는 실효의 경우)

- (1) 제 15 조 (보험계약의 무효) 의 규정에 의거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 당 회사는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 (2) 보험계약이 효력을 상실하였을 경우, 당 회사는 미경과기간 (효력을 상실했을 때 이후의 기간을 말합니다.) 에 대해 하루 단위로 계산한 보험료를 반환합니다.

제 22 조 (보험료의 반환 - 취소의 경우)

제 16 조 (보험계약의 취소) 의 규정에 따라 당 회사가 보험계약을 취소한 경우에 당 회사는 이미 납부된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제 23 조 (보험료의 반환 - 해제의 경우)

- (1) 제 6 조 (고지의무) (2), 제 10 조 (고지의무) (2) 또는 (6), 제 18 조 (중대사유에 의한 해제) (1) 또는 제 20 조 (보험료의 반환 또는 청구 - 고지의무·통지의무 등의 경우) (3) 의 규정에 따라 당 회사가 보험계약을 해제한 경우, 당 회사는 미경과기간 (해제 시이후의 기간을 말합니다.) 에 대해 하루 단위로 계산한 보험료를 반환합니다.
- (2) 제 17 조 (보험계약자에 의한 보험계약의 해제) 의 규정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해제한 경우에 당 회사는, 보험료에서 기경과기간 (보험기간의 초일부터 해제 시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에 대하여 별 표에 기재한 단기요율에 의거 계산한 보험료를 차감하고 그 잔액을 반환합니다. 단, 보험료가 매출액, 완성공사매출액, 임금 또는 입찰액 등에 대한 비율에 따라 정해지는 것일 때는 제 14 조 (보험료의 정산) (3) 의 규정에 기초하여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제 24 조 (선택특권 -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 (1) 제 1 조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의 사고에 따른 피보험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진 자 (이하 [피해자] 라고 합니다.) 는 피보험자의 당 회사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 (제 2 조 (손해의 범위) ①의 손해에 대한 것에 한합니다. 이하 이 조에 있어서는 동일합니다.) 에 대해 선택특권을 가집니다.
- (2) 당 회사가 제 2 조 ①의 손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다음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한합니다.
 -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해 배상채무를 변제한 후에 당 회사에서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경우 (피보험자가 변제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②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해 배상채무를 변제하기 전에 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라 당 회사가 직접 피해자에게 지급할 경우
 - ③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배상채무를 변제하기 전에, 피해자가 당 회사에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권에 관한 선택특권을 행사함에 따라 당 회사가 직접 피해자에게 지급할 경우
 - ④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배상채무를 변제하기 전에, 당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피해자가 승낙함에 따라 당 회사에서 피보험자에 지급할 경우 (피해자가 승낙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3) 보험금 청구권은 피해자 이외의 제 3 자에게 양도할 수는 없습니다. 또, 보험금 청구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또는 (2) ③의 경우를 제외하

고는 차압할 수 없습니다. 단, (2) ① 또는 ④의 규정에 의해 피보험자가 당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제 25 조 (보험금의 청구)

- (1)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권은, 제 2 조 (손해의 범위) ①의 손해에 관한 것은 보험사고에 의한 손해가 발생했을 때, 동 조 ②에서 ⑤까지의 손해에 대한 것은 피보험자가 비용을 지출했을 때에 각각 발생합니다.
- (2)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권은 다음에서 정한 시점부터 이를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 ① 제 2 조 ①의 손해에 대한 것은, 판결, 조정 혹은 재판상의 화해 또는 피보험자와 피해자 간의 서면 합의 중 어느 하나에 따른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제 1 조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의 손해액이 확정되었을 때
 - ② 제 2 조 ②에서 ⑤까지의 손해에 대한 것은 제 1 조의 손해액이 확정되었을 때
- (3) 피보험자의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경우는, 다음의 서류나 증거 가운데 당 회사가 요구하는 것을 보험증권과 함께 당 회사에 제출해야만 합니다.
 - ① 보험금 청구서
 - ② 피보험자가 손해 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함을 나타낸 판결서, 조정 조서 혹은 화해 조서 또는 피보험자와 피해자 당사자 간의 해결서
 - ③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손해 배상금을 변제한 것과 그 금액을 증명하는 서류
 - ④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에 대해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는 것과 그 금액을 증명하는 서류
 - ⑤ 제 2 조 ②에서 ⑤까지의 비용의 지출을 증명하는 영수증 또는 정산서
 - ⑥ 기타 당 회사가 다음 조 (1) 에 정한 필요사항의 확인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서류 또는 증거로서 보험계약 체결시 당 회사가 교부한 서면 등에 정한 것
- (4) 당 회사는, 사고의 내용 또는 손해액 등에 따라 (3) 에 나열된 것 이외의 서류 혹은 증거를 제출하도록, 또는 당 회사가 행하는 조사에 협력할 것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 회사가 요구하는 서류 또는 증거를 신속하게 제출하고 필요한 협력을 해야만 합니다.
- (5)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4) 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또는 (3) 혹은 (4) 의 서류에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혹은 그 서류나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하였을 경우, 당 회사는 그로 인해 당 회사가 입은 손해액을 차감하고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 26 조 (보험금의 지급시기)

- (1) 당 회사는, 피보험자가 전 조 (3) 에 규정한 절차를 완료한 날 (이하 이 조에 있어서 「청구 완료일」 이라고 합니다.) 로부터 그날을 포함한 30 일 이내에, 당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다음 사항의 확인을 거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① 보험금의 지급사유 발생의 유무 확인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사고의 원인, 사고발생의 상황, 손해 발생의 유무 및 피보험자에 해당 하는 사실
 - ②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유의 유무 확인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유로서 본 보험계약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의 유무
 - ③ 보험금 산출을 위한 확인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손해액 및 사고와 손해와의 관계
 - ④ 보험계약의 효력 유무의 확인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본 보험계약에 정한 해제, 무효, 실효 또는 취소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의 유무
 - ⑤ ①에서 ④까지 이외, 타 보험계약 등의 유무 및 내용, 손해에 대해서 피보험자가 가지는 손해 배상 청구권 기타 채권 및 이미 취득한 것의 유무 및 내용 등, 당 회사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액을 확정하기 위해 확인이 필요한 사항
- (2) (1) 의 확인을 위해, 다음에 나열된 특별한 조회 또는 조사가 불가결할 경우 당 회사는 (1) 의 규정에 관계 없이 청구 완료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한 다음 날을 다음에 기재한 일수 (복수에 해당할 경우는, 그 중 최장의 일수) 를 경과한 날까지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에, 당 회사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 및 그 확인을 거쳐야 할 시기를 피보험자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합니다.
 - ① (1) ①에서 ④까지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행하는 경찰, 검찰, 소방 기타의 공공의 기관에 의한 수사·조사 결과의 조회 (변호사법에 근거한 조회 기타 법령에 근거한 조회를 포함합니다.) 180 일

- ② (1) ①에서 ④까지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행하는 전문기관에 의한 감정 등의 결과의 조회 90 일
- ③ 재해구조법이 적용된 재해 피해지역에 대해 (1) ①에서 ⑤까지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 60 일
- ④ (1) ①에서 ⑤까지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일본국내에서 행할 대체 수단이 없을 경우의 일본국외에서의 조사 180 일
- (3) (1) 및 (2) 에 나열된 사항의 확인이나 조회 혹은 조사할 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의 실행을 방해하거나 이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 (필요한 협력을 하지 않았을 경우를 포함합니다.) 는 이로 인해 확인이 지연된 기간에 대해서는 (1) 또는 (2) 의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제 27 조 (타 보험계약 등이 있는 경우의 보험금 지급액)

타 보험계약 등이 있을 경우, 각각의 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에 대해서 타 보험계약 등이 없는 것으로 산출하여 지급해야 할 보험금 또는 공제금액 (이하 「지급책임액」 이라고 합니다.) 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 당 회사는, 다음에 정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① 타 보험계약 등으로부터 보험금 또는 공제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본 보험계약의 지급책임액
- ② 타 보험계약 등으로부터 보험금 또는 공제금이 지급되었을 경우 손해액에서 타 보험계약 등으로부터 지급된 보험금 또는 공제금의 합계액을 차감한 잔액. 단, 본 보험계약의 지급 책임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 28 조 (시효)

보험금 청구권은, 제 25 조 (보험금의 청구) (2) 에 정한 때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3 년을 경과했을 경우는 시효에 의해 소멸합니다.

제 29 조 (대위)

- (1) 손해 발생으로 인해 피보험자가 손해배상 청구권 기타 채권을 취득했을 경우에 당 회사가 그 손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했을 때 그 채권은 다음의 금액을 한도로 당 회사에 이전합니다.
 - ① 당 회사가 손해액의 전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했을 경우 피보험자가 취득한 채권의 전액
 - ② ① 이외의 경우 피보험자가 취득한 채권액에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손해액을 차감한 금액
- (2) (1) ②의 경우에, 당 회사에 이전하지 않고 피보험자가 계속하여 소유한 채권은 당 회사에 이전한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되는 것으로 합니다.
- (3)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당 회사에 이전할 (1) 의 채권의 보전 및 행사 그리고 이를 위해 당 회사가 필요로 하는 증거 및 서류의 입수에 협력하여야만 합니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당 회사에 협력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당 회사의 부담으로 합니다.

제 30 조 (소송의 제기)

본 보험계약에 관한 공소에 대해서는, 일본국내의 재판소에 제기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 31 조 (준거법)

본 보험약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일본국의 법령에 준거합니다.

별 표 (단기요율표)

기경과 기간	7일 까지	15일 까지	1개월 까지	2개월 까지	3개월 까지	4개월 까지	5개월 까지	6개월 까지	7개월 까지	8개월 까지	9개월 까지	10개월 까지	11개월 까지	1년 까지
단기요율	10%	15%	25%	35%	45%	55%	65%	70%	75%	80%	85%	90%	95%	100%

**공동보험에 관한 특약조항
(배상책임보험용)**

제 1 조 (독립 책임)

본 보험계약은 보험증권 기재상의 보험회사에 의한 공동보험계약으로, 보험증권 기재상의 보험회사는, 보험증권 기재의 각각의 보험금액 또는 인수비율에 따라 연대하는 것이 아니라 단독 별개로 보험계약상의 권리를 가지며 의무를 집니다.

제 2 조 (간사보험회사가 행하는 사항)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에 즈음하여 본 보험계약의 간사보험회사로 지명한 보험회사는, 보험증권기재상의 모든 보험회사를 위해 아래 표에 기재한 사항을 행합니다.

① 보험계약 신청서의 수령 및 보험증권 등의 발행과 교부
② 보험료의 수납 및 수령 또는 반환
③ 보험계약 내용 변경의 승인 또는 보험계약의 해제
④ 보험계약상의 규정에 근거한 고지 또는 통지에 관한 서류 등의 수령 및 그 고지 혹은 통지의 승인

⑤ 보험금 청구권 등의 양도의 통지에 관한 서류 등의 수령 및 그 양도의 승인 혹은 보험금 청구권에 관한 질권의 설정, 양도 또는 소멸의 통지에 관한 서류 등의 수령 및 그 설정, 양도 혹은 소멸의 승인
⑥ 보험계약에 관한 변경절차 완료의 안내 발행 및 교부 또는 보험증권에 대한 이서 등
⑦ 보험의 대상 기타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의 조사
⑧ 사고발생 혹은 손해발생의 통지에 관한 서류 등의 수령 또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 등의 수령
⑨ 손해의 조사, 손해의 사정, 보험금 등의 지급 및 보험증권 기재상의 보험회사의 권리 보전
⑩ 기타 ①에서 ⑨까지의 사무 또는 업무에 부수되는 사항

제 3 조 (간사보험회사의 행위의 효과)

본 보험계약에 관해 간사보험회사가 행한 제 2 조 (간사보험회사가 행하는 사항) 의 표에 나열한 사항은 보험증권 기재상의 모든 보험 회사가 이를 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 4 조 (보험계약자 등의 행위의 효과)

본 보험계약에 관한 보험계약자 등이 간사보험회사에 행한 통지 기타의 행위는, 보험증권기재상의 모든 보험회사에 대해 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시설소유 (관리) 자 특별약관

제 1 조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 (1) 당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배상책임보험 보통보험약관 (이하 보통보험 「약관」 이라고 합니다) 제 1 조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의 손해는 다음에 열거한 사유에 기인한 것에 한합니다.
 - ① 보험증권 기재상의 기명 피보험자 (이하 「기명 피보험자」 라고 합니다) 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보험증권 기재상의 부동산 산 또는 동산 (이하 「시설」 이라고 합니다.)
 - ② 시설의 용도에 따른 기명 피보험자의 보험증권 기재상의 일 (이하 「일」 이라고 합니다) 의 수행
- (2) 본 특별약관에 있어 피보험자란 다음을 말합니다.
 - ① 기명 피보험자
 - ② 기명 피보험자의 사용인
 - ③ 기명 피보험자가 법인인 경우는 그 법인의 이사, 대표, 기타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기관
 - ④ 기명 피보험자가 법인 이외의 사회단체인 경우는 그 구성원
 - ⑤ 기명 피보험자가 일반인인 경우는 그 동거 친족
- (3) 피보험자 상호간에 있어 기타 피보험자는 보통보험 약관 제 1 조의 「타인」 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명 피보험자가 (2) ②에서 ④까지의 상대에 대해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는 그 (2) ②에서 ④까지의 대상을 「타인」 으로 간주합니다.
- (4) 당 회사는 (1) 의 사유에 기인한 사고가 보험증권 기재상의 보험기간 중에 일본 국내 (보험증권의 「적용 지역」 란에 이와 다른 기재가 있는 경우는, 그 지역으로 합니다) 에서 발생한 경우에 한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 2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당 회사는 보통보험 약관 제 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와 제 8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에 규정된 손해 외에, 직접 혹은 간접에 상관없이 다음 사유에 기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통보험 약관 제 7 조 ①와 제 8 조 ③의 적용에 관한 판단은 피보험자에 따라 개별적으로 실시합니다.

- ① 급배수관, 냉난방장치, 습도조절장치, 소화전, 업무용 혹은 가사용 기구에서 증기나 물이 새거나 누출
- ② 스프링클러의 내용물이 새거나 누출
- ③ 건물 외부에서 내부로 비, 눈, 우박, 진논깨비 등이 들이침
- ④ 시설의 신축, 수리, 개조 또는 철거 등의 공사
- ⑤ 다음에 열거하는 것들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가. 자동차, 원동기가 부착된 자전거 또는 항공기나. 시설 밖에 있는 배, 차량 (원동력이 오로지 인력인 경우를 제외합니다) 또는 동물
- ⑥ 기명 피보험자의 점유를 떠난 다음에 열거된 것들가. 상품 또는 음식물나. 시설 밖에 있는 가에 규정된 이외의 재물
- ⑦ 일의 종료 (일의 목적물의 인도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인도 후 일이 종료된 것으로 합니다) 또는 포기 후에 일의 결과에 기인하여 발생한 사고. 단, 일을 한 장소에 기명 피보험자가 방치 또는 유기한 기계, 장치 또는 자재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 3 조 (관리하 재물면책의 수정)

"본 특별약관에 있어 보통보험 약관 제 8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

는 경우) ②의 규정은 다음과 같이 대체하여 적용합니다. ② 다음의 배상책임

가. 기명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의 손괴에 대해 그 재물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에 대해 부담하는 배상책임

나.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 제 1 조(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2) ②에서 ⑤까지의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가에 규정된 재물을 제외합니다)의 손괴에 대해, 그 재물에 대해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에 대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배상책임. 단, 본 규정의 적용에 대한 판단은 피보험자에 따라 개별적으로 실시합니다."

제 4 조 (한 사고의 정의)

동일한 원인 또는 사유에 기인하여 발생한 일련의 사고는 발생한 때와 장소 또는 피해자 수에 상관없이 「한 사고」로 간주하고, 최초로 사고가 발생한 때에 모든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 5 조 (대체 규정)

본 특별약관에 있어 보통보험 약관을 아래 표와 같이 대체하여 적용합니다.

보통보험 약관 규정	대체 전	대체 후
제 6 조 (고지의무) (1), (2) 와 (3) ③, 제 10 조 (통지의무) (1) 과 (2) 및 제 14 조 (보험료 정산) (2)	피보험자	기명 피보험자

제 6 조 (보통보험 약관 등과의 관련)

본 특별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본 특별약관에 위배되지 않는 한, 보통보험 약관 및 본 보험계약에 부속된 특약조항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2018년 1월 1일 상품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한 사고 정의의 적용에 있어 개정 전 상품으로 갱신된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으로 인정되는 사고에 대해 갱신 후 발생한 일련의 사고 중 최초의 사고를 한 사고의 정의에 있어 최초의 사고로 간주합니다.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 수정특약조항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용)**

본 보험계약에 있어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 규정에 상관없이 다음 규정을 적용합니다.

제 1 조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1) 당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배상책임보험 보통보험약관(이하「보통보험약관」이라고 합니다.) 제 1 조(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손해는, 다음 중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기인한 것에 한합니다.

- ①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보험증권 기재상의 부동산 또는 동산(이하「시설」이라고 합니다.)
- ② 시설의 용법에 따른 보험증권 기재상의 일(이하「일」이라고 합니다.)의 수행

(2) 당 회사는 (1)의 사유에 기인한 사고가 보험증권 기재상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고 합니다.) 중에 발생한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 2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당 회사는, 보통보험약관 제 7 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및 제 8 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규정하는 손해 이외, 직접, 간접에 관계 없이 다음 사유에 기인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급배수관, 냉난방 장치, 습도조절 장치, 소화전 또는 업무용이나 가사용 기구에서 증기 또는 물의 누출·일출
- ② 스프링쿨러에서 내용물의 누출·일출
- ③ 건물 외부에서 내부로 비, 눈, 우박, 진눈깨비 또는 싸라기 눈의 침입 또는 들이침
- ④ 시설의 수리, 개조 또는 해체 등의 공사
- ⑤ 다음에 나열된 것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
가. 자동차, 모터사이클(배기량 50cc 이하) 또는 항공기
나. 승강기(전적으로 화물 운반용으로 제공되는 것을 제외합니다.)
다. 시설 밖의 배·차량(원동력이 오로지 인력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또는 동물
- ⑥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난 다음에 나열된 것
가. 상품 또는 음식물
나. 시설 밖에 있는 가.에 규정한 것 이외의 재물
- ⑦ 일의 종료(일의 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때는 인도 후 일이 종료된 것으로 합니다.) 또는 방기(放棄) 후에 일의 결과에 기인하여 발생한 사고. 단, 일을 한 장소에 피보험자가 방치 또는 유기한 기계, 장치 또는 자제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 3 조 (한 사고의 정의)

지급한도액 또는 면책금액의 적용에서, 동일한 원인 또는 사유에 기인하여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일련의 사고는, 발생 시 또는 장소 혹은 피해자 수에 관계없이, 「한 사고」로 간주하고, 최초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 모든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 4 조 (보통보험계약등과의 관계)

본 특약조항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본 특약조항에 위배되지 않는 한, 보통보험 약관 및 본 보험계약에 부속된 특약조항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생산물 특별약관

제 1 조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1) 당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배상책임보험 보통보험 약관(이하「보통보험 약관」이라고 합니다.) 제 1 조(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손해는 다음에 열거한 사유에 기인한 것에 한합니다.

- ① 보험증권 기재상의 기명 피보험자(이하「기명 피보험자」라고 합니다.)의 점유를 떠난 보험증권 기재상의 재물(이하「생산물」이라고 합니다.)
- ② 기명 피보험자가 실행한 보험증권 기재상의 일(이하「일」이라고 합니다.)의 결과

(2) 본 특별약관에 있어 피보험자란 다음을 말합니다.

- ① 기명 피보험자
- ② 기명 피보험자의 사용자
- ③ 기명 피보험자가 법인인 경우는 그 법인의 이사, 대표, 기타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기관
- ④ 기명 피보험자가 법인 이외의 사회단체인 경우는 그 구성원
- ⑤ 기명 피보험자가 일반인인 경우는 그 동거 친족

(3) 피보험자 상호간에 있어 기타 피보험자는 보통보험 약관 제 1 조의 「타인」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명 피보험자가 (2) ②에서 ④까지의 상대에 대해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는 그 (2) ②에서 ④까지의 상대를 「타인」으로 간주합니다.

(4) 당 회사는 (1)의 사유에 기인한 사고가 보험증권 기재상의 보험기간 중에 일본 국내(보험증권의「적용 지역」란에 이와 다른 기재가 있는 경우는, 그 지역으로 합니다)에서 발생한 경우에 한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본 특별약관에 있어 다음 용어의 의미는 각각 다음의 정의에 따릅니다.

용어	정의
일의 목적물	일이 실시된 대상물 전부를 말합니다.
완성품	생산물을 원재료, 상품(첨가물 및 재료를 포함합니다), 용기 또는 포장으로 사용해 제조, 가공된 재물을 말합니다.
회수 등의 조치	생산물 또는 일 목적물, 그 일부를 이루는 기타 재물에 대해 회수, 검사, 수리, 교환, 그 외 적절한 조치를 말합니다.

제 3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1) 당 회사는 보통보험 약관 제 7 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및 제 8 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②를 제외합니다)에 규정된 손해 외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다음 사유에 기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통보험 약관 제 7 조 ① 및 제 8 조 ③의 적용에 관한 판단은 피보험자에 따라 개별적으로 실시합니다.

- ①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해 법령에 위반하여 제조, 판매, 제공한 생산물 및 행한 일의 결과
 - ② 피보험자에 의한 생산물 또는 일의 목적물의 효과나 성능에 관한 부당한 표시(실제보다 현저히 우수하다고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는 허위 표시
 - ③ 피보험자가 일을 한 장소에 방치 또는 유기한 기계, 장치, 자제
- (2) 당 회사는 피보험자가 다음 재물의 손괴 또는 사용 불능(재물 일부의 대여에 따른 그 재물의 다른 부분의 손괴 또는 사용 불능 상태를 포함합니다)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인해 입게 되는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생산물
- ② 일의 목적물 중, 사고의 원인이 된 작업이 가해진 재물(작업이 가해져야 했을 경우를 포함합니다.)
- ③ 완성품
- ④ 생산물 또는 완성품이 기계, 공구인 경우 및 기계, 공구의 제어 장치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는 그 기계, 공구에 의해 제조 및 가공된 재물

(3) 당 회사는 일의 결과에 따른 사고에 대해서는 일 종료(일의 목적물의 인수를 요하는 경우에는 인수로 합니다) 또는 유기 전에 발생

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 4 조 (회수 등 조치의 실시 의무)

- (1) 피보험자는 사고 발생 또는 발생우려를 감지했을 경우, 사고의 확대 또는 발생 (같은 종류의 사고의 발생을 포함합니다) 을 방지하기 위해 지체없이 회수 등의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 (2)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1) 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한 경우, 당 회사는 그로 인해 당 회사가 입은 손해액을 차감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3) 당 회사는 (1) 의 회수 등의 조치를 강구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는 피보험자의 지출여부에 상관없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4) 당 회사는 생산물 또는 완성품이 기계, 공구 등인 경우, 기계, 공구의 제어장치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는 그 기계, 공구에 의한 제조 및 가공된 재물에 대해 사고의 확대 또는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강구된 회수, 조사, 수리, 교환 기타 조치에 필요한 비용에 관해서는 피보험자의 지출여부와 상관없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 5 조 (한 사고의 정의)

동일한 원인 또는 사유에 기인하여 발생한 일련의 사고는 발생한 때와 장소 또는 피해자 수에 상관없이 「한 사고」 로 간주하고, 최초로 사고가 발생한 때에 모든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 6 조 (대체 규정)

본 특별약관에 있어 보통보험 약관을 아래 표와 같이 대체하여 적용합니다.

보통보험 약관 규정	대체 전	대체 후
제 6 조 (고지의무) (1), (2) 와 (3) ③, 제 10 조 (통지의무) (1) 과 (2) 및 제 14 조 (보험료 정산) (2)	피보험자	기명 피보험자

제 7 조 (보통보험 약관 등과의 관련)

본 특별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본 특별약관에 위배되지 않는 한, 보통보험 약관 및 본 보험계약에 부속된 특약조항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2018년 1월 1일 상품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한 사고 정의의 적용에 있어 개정 전 상품으로 갱신된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으로 인정되는 사고에 대해 갱신 후 발생한 일련의 사고 중 최초의 사고를 한 사고의 정의에 있어 최초의 사고로 간주합니다.

**생산물 특별약관 수정특약조항
(생산물 특별약관용)**

본 보험계약에 관해서는 생산물 특별약관에 상관없이 다음 규정을 적용합니다.

제 1 조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 (1) 당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배상책임보험 보통보험약관 (이하 「보통보험약관」 이라고 합니다.) 제 1 조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의 손해는, 다음 중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기인한 것에 한합니다.
 - ①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난 보험증권 기재상의 재물 (이하 「생산물」 이라고 합니다.)
 - ② 피보험자가 행한 보험증권 기재상의 일 (이하 「일」 이라고 합니다.) 의 결과
- (2) 당 회사는, (1) 의 사유에 기인한 사고가 보험증권 기재상의 보험기간 (이하 「보험기간」 이라고 합니다.) 중 일본국내에서 발생한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본 특별약관에서 다음 용어의 의미는, 각각 다음의 정의에 따릅니다.

용 어	정 의
일의 목적물	일이 행해진 대상물 전부를 말합니다.
완성품	생산물을 원재료, 부품 (첨가물 및 자재를 포함합니다.), 용기 또는 포장으로 사용하여 제조 또는 가공된 재물을 말합니다.
회수 등의 조치	생산물이나 일의 목적물 또는 이들의 일부를 형성하는 기타 재물에 관한 회수, 검사, 수리, 교환 기타 적절한 조치를 말합니다.

제 3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 (1) 당 회사는, 보통보험 약관 제 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및 제 8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에 규정하는 손해 이외에, 직접, 간접에 관계 없이, 다음 사유에 기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법령에 위반하여 제조, 판매 또는 제공한 생산물 혹은 행한 일의 결과
 - ② 피보험자에 의한 생산물 또는 일의 목적물의 효능 또는 성능에 관

한 부당한 표시 (실제보다도 현저하게 우량으로 나타낸 것을 말합니다.) 또는 허위 표시

- ③ 피보험자가 일을 한 장소에 방치하거나 유기한 기계, 장치 또는 자재
- (2) 당 회사는, 피보험자가 다음 재물의 손괴 또는 그 사용 불능 (재물의 일부 대어로 인해 그 재물의 다른 부분의 손괴 또는 사용 불능을 포함합니다.) 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생산물
 - ② 일의 목적물 가운데, 사고의 원인이 된 작업이 가해진 재물 (작업이 가해져야 했을 경우를 포함합니다.)
 - ③ 완성품
 - ④ 생산물 혹은 완성품이 기계·공구일 경우 또는 기계·공구 제어장치로서 사용되고 있을 경우에는, 그 기계·공구에 의해 제조 또는 가공된 재물
- (3) 일의 결과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 당 회사는 일의 종료 (일의 목적물의 인도를 요할 때는 인도로 합니다.) 또는 방기 (放棄) 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4) 일본국외의 재판소에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당 회사는 일체의 손해 (단, 그 소송을 제기한 자에 관련된 부분에 한합니다.) 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 4 조 (회수 등의 조치의 실시 의무)

- (1) 피보험자는, 사고의 발생 또는 발생우려를 감지하였을 경우, 사고의 확대 또는 발생 (동종의 사고의 발생을 포함합니다.) 을 방지하기 위해 지체 없이 회수 등의 조치를 강구해야만 합니다.
- (2)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1) 에 규정하는 의무에 위반했을 경우 당 회사는 그로 인해 당 회사가 입은 손해액을 차감하고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3) 당 회사는 (1) 의 회수 등의 조치를 강구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는 피보험자의 지출여부에 상관없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 5 조 (한 사고의 정의)

지급한도액 또는 면책금액의 적용에서, 동일한 원인 또는 사유에 기인하여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일련의 사고는, 발생 시 또는 장소 혹은 피해자 수에 관계없이, [한 사고] 로 간주하고, 최초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 모든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 6 조 (보통보험 약관 등과의 관계)

본 특약조항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본 특약조항에 위배되지 않는 한, 보통보험 약관 및 본 보험계약에 부속된 특약조항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수탁자 특별약관

제 1 조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 (1) 당 회사는 배상책임보험 보통보험 약관 (이하 「보통보험 약관」 이라고 합니다.) 제 1 조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및 제 8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②의 규정에 상관없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수탁물에 발생한 사고로 의해 수탁물의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에 대해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게 되는 손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① 수탁물이 보험증권 기재상의 보관시설 내에서 관리되고 있는 경우
 - ② 수탁물이 보험증권 기재상의 목적에 따라 보관시설 밖에서 관리되고 있는 경우
- (2) 본 특별약관에 있어 피보험자란 다음을 말합니다.
 - ① 보험증권 기재상의 기명 피보험자 (이하 「기명 피보험자」 라고 합니다.)
 - ② 기명 피보험자의 사용자
 - ③ 기명 피보험자가 법인인 경우는 그 법인의 이사, 대표, 기타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기관
 - ④ 기명 피보험자가 법인 이외의 사회단체인 경우는 그 구성원
 - ⑤ 기명 피보험자가 일반인인 경우는 그 동거 친족
- (3) 당 회사는 (1) 의 사고가 보험증권 기재상의 보험 기간 중에 일본국내 (보험증권 「적용지역」 란에 이와 다른 기재가 있는 경우, 그 지역으로 합니다) 에서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본 특별약관에 있어 다음 용어의 의미는 각각 다음의 정의에 따릅니다.

용어	정의
수탁물	기명 피보험자가 관리하고, 기명 피보험자 이외의 자가 소유하는 재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것들을 말하며 다음의 것들을 포함합니다. 가. 화폐, 지폐, 유가증권, 인지, 우표(요약인면 엽서를 포함합니다), 증서, 장부 나. 보석, 귀금속, 미술품, 골동품, 훈장, 휘장 다. 원고본, 설계서, 모형 라. 동물, 식물 마. 토지 및 그 정착물 바. 기타 가에서 마까지의 재물에 비견되는 것들
사고	손괴, 분실, 절취 및 사취를 말합니다.

제 3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당 회사는 보통보험 약관 제 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및 제 8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수탁물에 대해 ②를 제외합니다)에 규정된 손해 외에, 직접 혹은 간접에 상관없이 다음 사유에 기인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①과 ② 보통보험 약관 제 7 조 ① 및 제 8 조 ③의 적용에 관한 판단은 피보험자에 따라 개별적으로 실시합니다.

- ① 보험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수행하거나 가담한 절취 및 사취
- ② 보험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수탁물을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
- ③ 자연 발화 또는 자연 폭발에 의한 수탁물 자체의 손괴
- ④ 자연 소멸 또는 성질에 의한 증발, 곰팡이, 부패, 녹, 땀에 젖음 기타 이와 유사한 현상
- ⑤ 쥐가 갇아 먹음, 벌레 먹음, 기타 유사한 현상
- ⑥ 급배수관, 냉난방장치, 습도조절장치, 소화전, 업무용 혹은 가사용 기구에서 증기나 물이 새거나 누출, 또는 스프링클러에서 내용물이 새거나 누출됨
- ⑦ 건물 외부에서 내부로 비, 눈, 우박, 진눈깨비 등이 들이침
- ⑧ 수탁물이 기탁자에게 인수된 후 발견된 사고
- ⑨ 수탁물 사용 불능 (수익 감소를 포함합니다.)

제 4 조 (책임의 한도)

보통보험 약관 제 2 조 (손해 범위) ①의 법률상 손해배상금에 대해 당 회사가 지급하는 보험 금액은 사고가 발생한 장소 및 발생 시에 수탁물의 가격 (동일 종류, 동년식으로 같은 소모도의 재물에 대한 시장 판매가격 상당액을 말합니다) 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제 5 조 (한 사고의 정의)

동일한 원인 또는 사유에 기인하여 발생한 일련의 사고는 발생한 때와 장소 또는 피해자 수에 상관없이 「한 사고」로 간주하고, 최초로 사고가 발생한 때에 모든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 6 조 (대체 규정)

본 특별약관에 있어 보통보험 약관을 아래 표와 같이 대체하여 적용합니다.

보통보험 약관 규정	대체 전	대체 후
제 6 조 (고지의무) (1), (2) 와 (3) ③, 제 10 조 (통지의무) (1) 과 (2) 및 제 14 조 (보험료 정산) (2)	피보험자	기명 피보험자

제 7 조 (보통보험 약관 등과의 관련)

본 특별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본 특별약관에 위배되지 않는 한, 보통보험 약관 및 본 보험계약에 부속된 특약조항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2018년 1월 1일 상품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한 사고 정의의 적용에 있어 개정 전 상품으로 갱신된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으로 인정되는 사고에 대해 갱신 후 발생한 일련의 사고 중 최초의 사고를 한 사고의 정의에 있어 최초의 사고로 간주합니다.

**수탁자 특별약관 수정특약조항
(수탁자 특별약관용)**

본 보험에 있어 수탁자 특별약관 규정에 상관없이 다음 규정을 적용합니다.
제 1 조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1) 당 회사는, 배상책임보험 보통보험 약관 (이하 「보통보험 약관」 이라고 합니다.) 제 1 조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및 제 8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②의 규정에 관계 없이, 다음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안 수탁물에 생긴 사고로 인해, 수탁물의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손해 배상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① 수탁물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관시설 내에서 관리된 동안
- ② 수탁물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목적에 따라 보관시설 외에서 관리된 동안

(2) 당 회사는, (1) 의 사고가 보험증권 기재상의 보험기간 (이하 「보험기간」 이라고 합니다.) 중에 발생한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본 특별약관에서 다음 용어의 의미는, 각각 다음의 정의에 따릅니다.

용어	정의
수탁물	피보험자가 관리하는 타인의 재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것을 말하며, 다음의 물건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가. 화폐, 지폐, 유가증권, 인지, 우표, 증서, 장부 나. 보석, 귀금속, 미술품, 골동품, 훈장, 기장 다. 원고본, 설계서, 모형 라. 기타 가.에서 다.까지의 재물과 유사한 물건
사고	손괴, 분실, 절취 또는 사취를 말합니다.

제 3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당 회사는, 보통보험약관 제 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및 제 8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수탁물에 대해서는 ②를 제외합니다) 의 손해 이외, 직접, 간접에 관계 없이, 다음 사유로 기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법정대리인 (피보험자가 법인인 경우는, 그 이사, 임원 기타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사용자 혹은 피보험자와 동거하는 친족이 행하거나 가담한 절취 혹은 사취
- ②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법정대리인이나 사용자 혹은 피보험자와 동거하는 친족이 수탁물을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동안 발생한 사고
- ③ 자연발화 또는 자연폭발한 수탁물 자체의 손괴
- ④ 자연 소멸 또는 성질에 의해 증발, 곰팡이, 부패, 녹, 땀에 젖음, 기타 이와 유사한 현상
- ⑤ 쥐가 갇아먹음, 벌레 먹음, 기타 유사한 현상
- ⑥ 급배수관, 냉난방장치, 습도조절장치, 소화전, 업무용 혹은 가사용기구에서 증기 또는 물의 누출 혹은 일출이나 스프링클러에서 내용물이 누출 되거나 일출
- ⑦ 건물외부에서 내부로 비, 눈, 우박, 진눈깨비 또는 찌라기 등의 침입이나 들이침
- ⑧ 수탁물이 기탁자에게 인도된 후 발견된 사고
- ⑨ 수탁물의 사용 불능 (수익 감소를 포함합니다.)

제 4 조 (책임의 한도)

보통보험약관 제 2 조 (손해의 범위) ①의 법률상의 손해배상금에 관해 당 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액은, 사고가 발생한 장소 및 발생 시에 수탁물의 가격 (동일종류, 동년식으로 같은 소모도의 재물에 대한 시장 판매가격 상당액을 말합니다.) 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제 5 조 (한 사고의 정의)

지급한도액 또는 면책금액의 적용에서, 동일한 원인 또는 사유에 기인하여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일련의 사고는, 발생 시 또는 피해자 수에 관계없이, 「한 사고」로 간주하고, 최초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 모든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 6 조 (보통보험 약관 등과의 관계)

본 특약조항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본 특약조항에 위배되지 않는 한, 보통보험 약관 및 본 보험계약에 부속된 특약조항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기타 특약조항
원자력위험비담보특약조항**

(1) 당 회사는, 직간접에 관계없이, 다음 중의 어느 하나의 물질의 원자핵반응 또는 원자핵의 붕괴·분열 등에 의한 방사능, 폭발성 기타 유해한 특성의 작용 또는 이러한 특성에 기인하는 손해 (방사능 오염 또는 방사선 장애를 포함합니다.) 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핵연료물질 (사용이 끝난 연료도 포함합니다.)
- ② 핵연료물질
- ③ 방사성원소
- ④ 방사성동위원소
- ⑤ ①에서 ④까지의 어느 하나에 의해 오염된 것 (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2) (1) 의 규정은, 의학적 또는 산업적인 이용에 제공된 방사성동위원소 (우란, 토륨, 플루토늄 및 이러한 화합물 그리고 이러한 함유물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에 대해서는, 그 사용, 저장 또는 운반 중에 발생한 원자핵반응 혹은 원자핵의 붕괴나 분열로 인해 손해에 한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사용, 저장 또는 운반에 관한 법령위반이 있었던 경우를 제외합니다.

전문직업위험비담보특약조항

당 회사는 본 보험계약에 적용된 특별약관 또는 특약조항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피보험자 또는 그 사용자 기타 피보험자의 업무 보조자가 행하는 다음의 행위에 기인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질병의 치료 · 경감 · 예방, 진찰, 진단, 요양 방법의 지도, 교정, 출산의 입회, 검안, 혹은 진단서 · 검안서 · 처방전 등의 작성 · 교부 등의 의료행위 (법령에 의해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보건사 또는 조산사 이외의 자가 행하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 ② 미용정형, 의학적 낙태, 조산 또는 체형 기타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보건사 또는 조산사가 행하지 않았을 경우 인체에 위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행위 (법령에 의해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보건사 또는 조산사 이외의 자가 행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 ③ 약품의 조제 또는 투여 혹은 약품의 판매나 공급
- ④ 안마 마사지 지압사, 침술사, 뜸치료사, 또는 유도접골사 이외의 자가 행하는 것이 법령에 의해 금지되어 있는 행위
- ⑤ 건축사, 토지 가옥 조사원, 기술사, 측량사 또는 수의사 이외의 자가 행하는 것이 법령에 의해 금지되어 있는 행위

오염위험비담보특약조항

제 1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당 회사는 직접 혹은 간접에 상관없이 오염물질의 배출, 유출, 누출 및 방출 (이하 「배출 등」 이라고 합니다) 또는 폐기물 불법투기 및 부적당한 처리에 기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단, 오염물질 배출 등에 대해 다음의 모든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 ① 오염물질 배출 등이 예측 불가능한 것.
 - ② 오염물질 배출 등의 원인이 되는 사고 (이하 「사고」라고 합니다) 가 돌발적으로 발생한 것.
 - ③ 오염물질 배출 등이 급격한 것.
 - ④ 사고 발생 후 7 일 이내에 피보험자가 오염물질 배출 등을 발견하고, 아울러 21 일 이내에 배생책임보험 보통보험 약관 제 12 조 (사고 발생) (1) ①에 규정된 사항을 당 회사에 통지한 것.
- (2) (1) 의 「오염물질」이란, 생물 (인체를 포함합니다.) 에 유해한 물질, 또는 토양, 대기 혹은 물의 오염 원인이 되는 물질을 말합니다. 한편 이들의 물질에는, 연기, 증기, 매연, 약취, 산, 알칼리, 화학물질, 석유, 폐기물 (재활용을 위한 물질을 포함합니다.) 등을 포함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본 특약조항에 있어 다음 용어의 의미는 각각 다음의 정의에 따릅니다.

용어	정의
오염물질	고체 상태, 액체 상태, 또는 기체 상태 등의 물질 상태 및 산성 또는 알칼리성 등의 물질의 성질에 상관없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합니다. 가. 유해한 화학물질 나. 위험물질 다. 가, 나 이외의 생물에 유해한 물질 및 토양, 대기 또는 수질 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 라. 약취 마. 석유화학물질
석유화학물질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물질을 말합니다. 가. 원유,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윤활유, 피치, 콜타르 등 석유류 나. 가의 석유류에 의해 만들어진 화제품 종류 다. 가, 나외의 성질이 포함된 혼합물, 폐기물 및 찌꺼기
오염정화 비용	그 명칭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오염물질의 조사, 감시, 청소, 이동, 수용, 처리, 해독, 중화 등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말합니다.

제 3 조 (오염정화 비용의 취급)

당 회사는 오염정화 비용 또는 이에 따른 손실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단, 제 1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단서의 경우에 있어 피보험자가 타인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게 되는 손해를 제외합니다.

석면손해등비담보특약조항

당 회사는, 직접, 간접에 관계 없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에 기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석면 또는 석면을 포함한 제품의 발암성 기타 유해한 특성
- ② 석면의 대체 물질 또는 그 대체 물질을 포함한 제품이 지니는 발

암성 기타 석면과 동종의 유해한 특성

Gakkensai 부대배상책임보험특약조항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 수정특약조항, 생산물 특별약관 수정특약조항, 수탁자 특별약관 수정특약조항, 보험료에 관한 규정 변경 특약조항, 오염위험비담보 특약조항용)

제 1 장 공통조건

본 장에 기재된 특약조항은 시설소유 (관리) 자 특별약관 수정특약조항 (이하 「수정특약 (시설)」 이라고 합니다), 생산물 특별약관 수정특약조항 (이하 「수정특약 (생산물)」 이라고 합니다), 수탁자 특별약관 수정특약조항 (이하 「수정특약 (수탁자)」 라고 합니다), 보험료에 관한 규정 개정 특약조항 및 오염위험비담보 특약조항에 적용됩니다.

Gakkensai 부대배상책임보험 공통특약조항

제 1 조 (용어의 정의)

본 보험약관에서 다음의 용어의 의미는 각각 다음의 정의에 따릅니다.

용어	정의
대학 등	피보험자가 재적한 학교교육법 등에 규정된 대학 혹은 고등전문학교 또는 공익재단법인 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의 찬조회원인 대학교를 말합니다.
학생	대학 등의 학부, 학과 혹은 연구과 또는 이것들의 전공과 그리고 별과에 재적한 학생을 말하며, 유학생, 청강생, 연구생 및 과목 등의 이수생을 포함합니다.
정규과정	피보험자가 재적한 대학 등이 하는 강의, 실험, 실습, 연습 또는 실기에 관계된 수업 (학점상호교환에 의해 타 대학 등이 행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하 「수업」 이라고 합니다.) 을 말하며, 다음의 활동을 포함합니다. 가. 지도 교원의 지시에 따라 행하는 졸업 논문 연구 또는 학위논문연구. 단, 전적으로 피보험자의 사생활과 관련된 장소에서 행하는 것을 제외합니다. 나. 지도교원의 지시에 따라 행하는 수업 준비나 뒷마무리 또는 대학 등의 수업이 행해지는 장소, 도서관, 자료실 혹은 어학학습 시설 등에서 하는 연구활동
학교행사	대학 등이 주최하는 입학식, 오리엔테이션, 졸업식 등, 대학 등이 교육활동의 일환으로서 행하는 각종 행사를 말합니다.
과의 활동	대학 등의 규칙에 의거한 소정의 절차에 의해, 인턴쉽 또는 자원봉사 활동의 실시를 목적으로 한 조직으로 승인을 받은 학내 학생단체가 행하는 인턴쉽 또는 자원봉사 활동을 말합니다. 단, 대학 등이 금한 시간 또는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활동 및 금지 행위를 제외합니다.
인턴쉽	학생이 재학 중에 자신의 전공이나 장래의 커리어에 관계된 기업 등에 참가하는 취업 체험을 말합니다.
불런티어 활동	각자 자유의지에 따라 개인이 지닌 능력, 노동력 혹은 재산을 통해 사회에 공헌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개호체험활동	초등학교 및 중학교 교사의 보통면허장 수여에 관한 교육직원면허법의 특례등에 관한 법률 (1997 년 법률 제 90 호) 에 기초를 두고, 초등학교 및 중학교 교사의 보통면허 취득을 희망하는 학생이 행하는 개호 등의 체험 활동을 말합니다.
교육실습	교육직원면허법 (1949 년 법률 제 147 호) 제 5 조의 별표 제 1, 별표 제 2 및 별표 제 2 의 2 및 동법 시행 규칙 (1954 년 문부성령 제 26 호) 제 6 조 제 1 항에서 정한 표의 제 5 란에 규정한 「교육실습」 에 해당하는 과목에서, 학생이 교사면허 취득을 위해 교육실습기관인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고등학교에서 행하는 활동을 말하며, 특별지원학교 교사면허 취득에 관한 「심신에 장애가 있는 유아, 아동 또는 학생에 관한 교육실습」 및 양호교사 면허취득에 관한 「양호실습」 을 포함합니다.
보육실습	아동복지법 (1947 년 법률 제 164 호) 및 동시행 규칙 (1948 년 후생성령 제 11 호) 에 규정된 후생노동대신이 정하는 수업 교과목 가운데 「보육 실습」 에 해당하는 과목에서, 학생이 보육사 자격취득을 위해 보육실습기관인 탁아소 등의 실습시설에서 행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약학교육실무실습	대학 등의 약학부 및 이와 유사한 학부·(학) 과가 정규과정 또는 학교행사로서 인정하고 행하는 실습을 말합니다.
의료관련실습	대학 등의 의료관련학부·(학) 과가 정규과정 또는 학교행사로서 인정하고 행하는 실습을 말합니다.

용어	정의
의료관련학부·(학) 과	가. 학부 의학부, 치학부, 간호학부, 침구학부 및 이와 유사한 학부를 말합니다. 나. (학) 과 의학과, 치학과, 간호(학) 과, 위생간호(학) 과, 진료방사선(기술) 학과, 방사선과, 의료용전자기술과, 임상검사(학) 과, 위생기술(학) 과, 물리 요법학과, 작업요법(학) 과, 치과위생(사) (학) 과, 침구학과, 보건과, 언어청각요법학과, 미용보건학과, 스포츠 의학과, 시력기능요법학과 및 이와 유사한 학과를 말합니다.
클럽활동	대학 등의 규칙에 따른 소정의 절차를 통해 승인을 받은 학내 학생단체가 행하는 문화활동 또는 체육활동을 말합니다. 단, 과외활동 및 대학 등이 금한 시간 또는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활동 및 금지 행위를 제외합니다.
사회인 입시	일반의 입시지원자와 다른 방법에 의해 평가하는 입시전형 중에서 사회인특별선발입시 등의 사회인을 대상으로 하는 시험을 말합니다.

제 2 조 (피보험자 및 다른 피보험자와의 관계)

- (1) 본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란, 대학 등에 재적한 학생이며 학생교육연구 재해상해보험(이하「Gakkensai」라고 합니다.)에 가입한 자 중에서 본 보험계약에 가입 신청한 자를 말합니다.
- (2) 본 보험계약의 규정은, 각 피보험자에 대해 별개로 이를 적용하고, 피보험자 상호간의 관계는 각각 상호 타인으로 간주합니다.

제 3 조 (보험책임의 적용시작시기와 종료시기)

- (1) 본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은, 배상책임보험 보통보험약관(이하「보통보험약관 보험약관」이라고 합니다.) 제 5 조(보험책임의 적용시작시기 및 종료시기) 1)의 규정에 관계 없이,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입학일까지 Gakkensai 에 가입하고, 아울러, 보험료 상당액을 대학 등에 납부하고 본 보험계약에 가입 신청한 학생에 대해서는 보험증권 기재상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고 합니다.)의 초일 오전 0 시부터 말일 오후 12 시까지
 - ② 보험기간의 도중에 본 보험계약에 가입한 자(이하「중도가입자」라고 합니다.)에 대해서는, 중도가입자가 대학 등에 가입신청 및 보험료 상당액을 납부한 날의 다음날 오전 0 시부터 보험기간의 말일 오후 12 시까지
- (2) 대학 등이 다음 사항을 모두 이행하였을 경우, 본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은 (1)의 규정에 관계 없이 보험기간의 초일 오전 0 시부터 말일 오후 12 시까지로 합니다.
 - ① 학부, 학과, 연구과, 전공과 또는 별 과의 학년단위 이상의 모든 학생을 Gakkensai 및 본 보험계약에 가입시킬 것(이하「전원 가입」이라고 합니다.)을 보험기간의 초일 이전에 교수회 등의 결의에 의해 기관결정하는 것.
 - ② 전원 가입의 보험료 상당액을 대학 등이 부담하는 것.
- (3) 전년도 보험계약에서부터 계속해서 가입할 경우로, 대학 등이 전년도의 보험계약에서 (2) ① 및 ②를 이행하였을 때의 보험기간은 (2)의 규정에 준합니다.

제 4 조 (지급한도액 등 및 보험료)

본 보험계약의 피보험자 1 인의 1 년당 지급한도액과 면책금액 및 피보험자 1 인당 보험료는 아래 표 기재와 같습니다.

(아래 표)

		A 코스	B 코스	C 코스
1 인의 1 년당 지급한도액		한 사고 1 억엔 (대인·대물배상공통) (면책금액 0 엔)		
피보험자 1 인당 보험료	1 년간	340 엔	210 엔	500 엔
	2 년간	680 엔	420 엔	1,000 엔
	3 년간	1,020 엔	630 엔	1,500 엔
	4 년간	1,360 엔	840 엔	2,000 엔
	5 년간	1,700 엔	1,050 엔	2,500 엔
	6 년간	2,040 엔	1,260 엔	3,000 엔

제 5 조 (가입자의 통지)

- (1) 보험계약자는 각 대학 등의 입학일에 본 보험계약 가입자를 집계표에 정리하고, 보험계약 체결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그 가입 신청서를 첨부해서 당 회사에 통지하여야만 합니다.
- (2) 보험계약자는, 전전달 분의 중도가입자를 집계표에 정리하고, 매월 말일(이하「통지일」이라고 합니다.)까지는 그 가입 신청서를 첨부해서 당 회사에 통지해야만 합니다.
- (3) (1) 또는 (2)에 규정한 가입 신청서의 제출에 지체 또는 누락이 있었을 경우, 당 회사는 지체 또는 누락된 가입자 또는 중도가입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가 당

음의 모든 사항을 이행하고, 당 회사가 이것을 승인했을 경우를 제외합니다.

- ① 지체 또는 누락이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있지 않음을 증명할 것.
- ② 지체 또는 누락된 가입자 또는 중도가입자에 대해 정정 후의 집계표 및 가입 신청서를 첨부하여 즉시 당 회사에 통지할 것.
- ③ ②의 가입자 또는 중도가입자에 관계된 보험료를 즉시 당 회사에 납부할 것.

제 6 조 (보험료의 납부)

- (1) 보험료에 관한 규정 변경 특약조항 제 4 절 제 1 조(보험료 반환, 추가 및 변경) (4)의 규정에 상관없이 보험 계약자와 앞의 조항 (2)의 통지일에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까지 제 4 조(지급한도액 및 보험료) 규정을 근거로 산출된 보험료를 당 회사에 입금하는 것으로 합니다.
- (2) 보험 계약자가 (1)에 규정된 지급일까지 보험료를 입금하지 않은 경우, 당 회사는 보험료 영수 전에 발생한 손해(중도가입자에 관한 부분에 한합니다)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당 회사는 보험 계약자에 대해 서면에 통지를 통해 본 보험계약(중도 가입자에 관한 부분에 한합니다)을 해약할 수 있습니다. 본 해약의 효과는 보통보험 약관 제 19 조 규정에 상관없이 중도 가입자의 보험 기간 첫날에 소급하여 그 효력을 발생합니다.

제 7 조 (변경사항의 취급)

- (1) 보험계약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대학 등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당 회사에 통지하는 것으로 합니다.
 - ① 피보험자가 학부·학과 등을 변경할 경우
 - ② 피보험자가 퇴학할 경우
- (2)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동안에 통산하여 1 년 이상 휴학(유학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할 경우에, 대학 등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휴학기간 종료 후 신속하게 당 회사에 통지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 8 조 (보험료의 반환 등)

- (1) 당 회사는, 보통보험 약관 제 23 조(보험료의 반환 - 해제)의 경우
- (2)의 규정에 관계없이, 전 조 (1) ②의 통지가 있었을 경우는, 다음 산식에 의해 산출한 액을 보험계약자에게 반환합니다. 단, 퇴학한 날이 속하는 기경과연도의 기간은 1 년단위로 합니다 (1 년미만의 끝수는 올림합니다.) .

$$\text{기수보험료} - \text{기경과연도의 기간에 대응하는 적용보험료}$$

$$= \text{반환보험료}$$

- (2) 당 회사는, 보통보험약관 제 23 조 (2)의 규정에 관계없이, 전 조 (2)의 통지가 있었을 경우는, 보험기간 종료 시에 다음의 산식에 의해 산출한 금액을 보험계약자에게 반환합니다. 단, 통산 휴학 기간은 1 년단위로 합니다 (1 년미만의 끝수는 올림합니다.) .

$$\text{기수보험료} - \text{보험기간에서 통산 휴학 기간을 차감한 기간에}$$

$$\text{대응하는 적용 보험료} = \text{반환보험료}$$

- (3) 피보험자가 제 2 장 시설배상책임보험 특약조항 시설배상책임보험 추가특약조항 제 1 조(대상으로 하는 일)에 규정하는 일(가입 코스)을 변경할 경우, 당 회사는, (1)의 산식에 의해 산출한 액을 보험계약자에게 반환하고, 새로운 가입 코스의 미경과연도에 대한 보험료를 청구합니다.

제 9 조 (장부 등의 열람)

- (1) 보험계약자는, 제 3 조(보험책임의 적용시작시기 및 종료시기) (2)에 규정하는「전원 가입」이외의 피보험자에 대해서는, 가입자명부를 작성하고 신속하게 당 회사에 제출하는 것으로 합니다.
- (2) 당 회사는, 본 보험계약에 관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가입자 명부의 제출여부에 관계없이, 보험계약자의 가입자명부, 장부 기타의 관계서류를 수시 열람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제 10 조 (면책규정의 적용제외)

- (1) 본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가 행하는 의료관련실습은, 전문직업취업비담보특약 조항 ①에서 ⑤까지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2) 본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가 행하는 약학교육실무실습은 전문직업취업비담보특약 조항 ③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3) (1) 또는 (2)의 규정은, 다음의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에 한해 적용합니다.
 - ① 대학 등이 정규과정 또는 학교행사로써 인정하는 실습일 것.
 - ② 피보험자가 그 전문자격에 관한 행위를 업무(아르바이트 기타 평상시 행하는 것을 포함합니다.)로서 행하고 있지 않을 것.
 - ③ ① 및 ②에 대해 대학 등의 증명을 받을 수 있는 것.

제 11 조 (보험금 청구 서류)

피보험자는,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보통보험약관 제 25 조 (보험금 청구) (3) 에 규정하는 서류 이외의 다음 서류를 당 회사에 제출하는 것으로 합니다.

- ① 보험금을 청구하는 자가 본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것에 대한 대학 등의 증명
- ② 사고 발생 일시 및 장소에 관한 대학 등의 증명
- ③ 사고의 원인이 된 행위가 정규과정, 학교행사 또는 과외활동에 해당하는 것에 관한 대학 등의 증명
- ④ 사고의 원인이 된 행위가, 제 2 장 시설배상책임보험특약조항 시설배상책임보험 추가특약조항 제 1 조 (대상으로 하는 일) (2) 에서 (4) 까지 규정하는 것일 경우는, 부대배책왕복사고증명서

제 12 조 (보통보험약관 등과의 관계)

본 특약조항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본 특약조항에 위배되지 않는 한 보통보험특약, 수정특약 (시설), 수정특약 (생산물) 및 수정특약 (수탁자), 특약조항에 부속된 타 특약조항 규정을 적용합니다.

오염위험비담보 특약조항

본 보험계약에 있어서는 오염위험비담보 특약조항 규정에 상관없이 다음 규정을 적용합니다.

제 1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 (1) 당 회사는 직접 혹은 간접에 상관없이 오염물질의 배출, 유출, 누출 (이하 「배출 등」 이라고 합니다) 에 기인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모든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 ① 배출 등이 예측할 수 없는 것.
 - ② 배출 등이 원인이 되는 사고 (이하 「사고」 라고 합니다) 가 돌발적으로 발생한 것.
 - ③ 배출 등이 급격한 것.
 - ④ 사고 발생 후 7 일 이내에 피보험자가 오염물질 배출 등을 발견하고, 아울러 21 일 이내에 보통보험 약관 제 12 조 (사고 발생) (1) ①에 규정된 사항을 당 회사에 통지한 것.
- (2) (1) 의 「오염물질」 이란 생물 (인체를 포함합니다) 에 유해한 물질, 또는 토양, 대기 및 수질 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을 말합니다. 또한 이러한 물질에는 연기, 증기, 매연, 악취, 산, 알칼리, 화학물질, 석유, 폐기물 (재활용을 위한 물질을 포함합니다) 등을 포함합니다.

제 2 조 (오염정화 비용의 취급)

- (1) 당 회사는 오염정화 비용 및 이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단, 앞의 조항 (1) 단서의 경우, 피보험자가 타인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게 되는 손해를 제외합니다.
- (2) (1) 의 「오염정화 비용」 이란, 그 명칭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오염물질의 조사, 감시, 청소, 이동, 수용, 처리, 해독, 중화 등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말합니다.

제 3 조 (보통보험약관 등과의 관련)

본 특약조항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본 특약조항에 위배되지 않는 한 보통보험특약, 수정특약 (시설), 수정특약 (생산물) 및 수정특약 (수탁자), 특약조항에 부속된 타 특약조항 규정을 적용합니다.

제 2 장 시설배상책임보험 특약조항

본 장에 기재된 특약조항은 수정특약 (시설) 에 적용됩니다. .

시설배상책임보험 추가특약 조항

제 1 조 (대상이 되는 일)

- (1) 본 보험계약에 있어 수정특약 (시설) 제 1 조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에 규정된 보험증권 기재상의 일 (이하 「일」 이라고 합니다) 이란 다음을 말합니다.
 - ① 「집계보고」 에 「A 코스」 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는 일본 국내외에서 실시되는 정규과정, 학교행사 또는 과외활동 (②의 B 코스 활동을 포함) 을 말합니다. 단, 의료 관련 실습을 제외합니다.
 - ② 「집계보고」 에 「B 코스」 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는 대학 등이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정규과정, 학교행사 또는 과외활동 중에 어느 하나로 인정하여 일본 국내외에서 실시하는 인턴십, 개조체험활동, 교육실습, 보육실습 또는 자원봉사활동을 말합니다. 단, 약 학교육 실무실습 및 의료 관련 실습을 제외합니다.
 - ③ 「집계보고」 에 「C 코스」 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는 일본 국내외에서 실시되는 의료 관련 학부·학과의 정규과정, 학교행사 또는 과외활동 (②의 B 코스 활동을 포함) 을 말하며, 의료 관련 실습을 포함합니다.
- (2) 피보험자가 (1) ①에서 ③까지 규정하는 활동에의 참가를 목적으로

그 주거 (사회인 입시를 거쳐 대학 등에 입학한 학생에 한하여 그 근무처를 포함합니다.) 와 활동 장소가 되는 시설 간 (활동 장소가 복수의 시설에 걸친 경우는 그들의 시설과 시설 간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을 합리적인 경로 및 방법 (대학 등이 금지한 방법을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으로 이동 중에 행한 행위는 「일」 에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단, 피보험자가 합리적인 경로를 이탈 또는 이동을 중단한 때 이후의 행위를 제외합니다.

- (3) (2) 단서의 경우에서, 이탈 또는 중단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의한 것일 경우는, 그 이탈 또는 중단한 동안을 제외하고, 그 행위를 「일」 에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 ① (1) 의 「일」 에 필요한 물품의 구입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위한 필요 최소한의 행위
- ② 선거권의 행사, 병원·진료소 등에 진찰·치료 또는 이에 준하는 일상 생활상의 필요 최소한의 행위
- (4) 피보험자가 대학 등의 정규과정 또는 학교행사에 맞추어 그날의 클럽 활동에 참가할 경우는, (2) 또는 (3) 의 규정에 관계 없이 그 주거와 활동 장소가 되는 시설 간을 합리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해 이동 중에 행한 행위를 「일」 에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단, 피보험자가 합리적인 경로를 이탈할 또는 이동을 중단한 때 이후의 행위 및 클럽활동 중의 행위는 제외합니다. .

제 2 조 (보통보험약관 등과의 관계)

본 특약조항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본 특약조항에 위배되지 않는 한 보통보험 약관 및 수정특약 (시설), 본 보험계약에 부속된 타 특약조항 규정을 적용합니다.

제 3 장 생산물배상책임보험 특약조항

본 장에 기재된 특약조항은 수정특약 (생산물) 에 적용됩니다.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추가특약조항

제 1 조 (대상이 되는 생산물 및 일)

본 보험계약에 있어 수정특약 (생산물) 제 1 조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에 규정된 보험증권 기재상의 재물 (이하 「생산물」 이라고 합니다) 및 보험증권 기재상의 일 (이하 「일」 이라고 합니다) 이란 각각 다음을 말합니다.

- ① 생산물
음식물 및 정규과정, 학교행사 또는 과외활동의 성과물 (약제를 포함합니다.)
- ② 일
제 2 장 시설배상책임보험 특약조항 시설배상책임보험 추가특약조항 제 1 조 (대상이 되는 일) 에서 규정하는 일

제 2 조 (보통보험약관 등과의 관계)

본 특약조항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본 특약조항에 위배되지 않는 한 보통보험 약관 및 수정특약 (생산물), 본 보험계약에 부속된 타 특약조항 규정을 적용합니다.

국외사고담보특약조항

제 1 조 (대체적용 규정)

당 회사는 수정특약 (생산물) 제 1 조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2) 의 규정을 다음과 같이 대체하여 적용합니다.

- 「(2) 당 회사에서는 (1) 의 사유에 기인한 사고가 보험증권 기재상의 보험기간 (이하 「보험기간」 이라고 합니다) 중에 발생한 경우에 한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제 2 조 (면책 규정의 적용 제외)

당 회사는 일본 국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수정특약 (생산물) 제 3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4)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 3 조 (보통보험약관 등과의 관계)

본 특약조항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본 특약조항에 위배되지 않는 한 보통보험 약관 및 수정특약 (생산물), 본 보험계약에 부속된 타 특약조항 규정을 적용합니다.

제 4 장 수탁자배상책임보험 특약조항

본 장에 기재된 특약조항은 수정특약 (수탁자) 에 적용됩니다.

수탁자 배상책임보험 추가특약 조항

제 1 조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본 보험계약에 있어 수정특약 (수탁자) 제 1 조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에 규정된 「수탁물」 이란 제 2 장 시설 배상책임보험 특약조항 시설 배상책임보험 추가 특약조항 제 1 조 (대상이 되는 「일」) 에 규정된 「일」 에 종사 중인 피보험자가 사용 또는 관리하는 타인의 재물을 말합니다.

제 2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당 회사는 보통보험 약관 제 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및 제 8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수정특약 (수탁자) 제 3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규정된 손해 외에, 직접 혹은 간접에 상관없이 자전거, 오토바이, 자동차, 원동기가 부착된 자전거, 항공기, 선박, 차량, 동물, 악기 외에 이와 유사한 수탁물의 파손, 분실, 절취 및 사취에 의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 3 조 (보통보험약관 등과의 관계)

본 특약조항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본 특약조항에 위배되지 않는 한 보통보험 약관 및 수정특약 (수탁자), 본 보험계약에 부속된 타 특약조항 규정을 적용합니다.

IV. 중요사항설명서

계약개요·주의환기 정보의 설명

- 계약개요는 가입하신 보험 상품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특히 중요한 정보를 기재한 것입니다. 반드시 읽어 주십시오.
 - 주의환기정보는, 가입하신 학생여러분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사항 등, 특히 주의해야 할 정보를 기재한 것입니다. 반드시 읽어주십시오.
 - 본 안내서는 가입하신 보험에 관한 모든 내용이 기재된 것은 아닙니다. 자세한 사항은 P6~P16의 보험 약관 등에 따릅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재적 중인 학교의 담당창구(학생과, 학생지원과, 보건센터 등)로 문의하십시오.
- ※가입자증 등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이 「안내」, 「Gakkensai부대배상책임보험 안내」 등 가입내용을 알 수 있는 것을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계약개요

1. 상품의 구조 및 인수조건 등

(1) 상품의 구조

본 보험은 공익재단법인 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를 계약자로 하고, 동 협회의 창조회원 학교에 재적한 학생을 피보험자(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분)로 하는 단체계약입니다. 보험증권을 청구할 권리, 보험계약을 해약할 권리 등은 원칙적으로 동 협회가 소유합니다.

(2) 보상 내용·보험기간(보험의 계약 기간)

①주된 지급 사유(보상 대상이 되는 경우), 지급 보험금 ②주된 면책사유(보상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③보험기간 등은 P1~P4를 참조하십시오.

(3) 인수조건(보험금액 등)

본 보험의 인수조건(지급 한도액)은 사전에 정해진 계약 코스 중에서 선택하게 됩니다. 계약 코스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P1을 참조하십시오.

2. 보험료·보험료 납부 방법

보험료는 가입하시는 계약 코스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P1을 참조하십시오.

3. 만기환급금·계약자 배당금

본 보험에는 만기환급금·계약자 배당금은 없습니다.

2. 주의환기정보

1. 보상 중복에 관한 주의

피보험자 또는 그 가족이 이미 같은 종류의 다른 보험 상품을 계약한 경우에는 보상 범위가 중복될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계약 내용을 재검토해 주십시오. 또 보상 범위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계약 내용을 재검토할 경우, 장래 보상이 남아 있는 계약을 해약할 때 그 보상이 상실될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2. 고지 의무 등

가입 시 인수보험회사에 중요사항(*1)을 신고하실 의무가 있습니다.

- 가입 시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르면 계약이 해제되거나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 타인을 위해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나 그 대리인에게 과실이 없어도 피보험자(보험 대상자) 또는 그 대리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대학집계보고서의 기재 사항이 누락되어 있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1) 타 보험계약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3. 통지 의무 등

(1) 가입 후 유의 사항(변경 사항 통지 등)

퇴학 통지나 사고 발생 시의 수속절차 등은 P4~P5를 참조하십시오.

(2) 차기 갱신계약의 인수

보험금청구상황 등에 따라서는, 차기 이후의 갱신계약의 인수를 거부하거나 인수조건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에 양해해 주십시오.

4. 보험 개시일

P2을 참조해 주십시오.

5. 주된 면책사유(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 주된 경우) 등

P4을 참조해 주십시오.

6. 인수 보험회사 파탄시의 취급

인수 보험회사의 경영이 파탄에 이른 경우 등에는 보험금, 반환금 등의 지급이 일정기간 동결되거나, 금액이 삭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P19를 참고하십시오.

7. 공동보험에 대하여

공동 보험에 대해서는 표지이면을 참조해 주십시오.

8. 개인정보의 취급에 대하여

P19를 참고하십시오.

V. 사고의 경우는

Gakkensai 부대배상책임보험에 대해

본 보험에서 대상이 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도쿄해상일동 학교보험 코너
 0120-868-066 로 하기의 내용을 연락해 주십시오.

- 자신의 성명, 연령, 재적 학교명
- 사고 원인
- 피해자의 성명, 연령
- 사고 발생 장소
- 사고 발생일, 시각
- 피해 (상해, 손괴 등) 의 정도

또한, 학교의 담당창구 (학생과 · 학생지원과 · 보건센터 등) 에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통지하고, 보험회사에 상기의 내용을 알렸다는 사실을 통보하여 주십시오.

도쿄해상일동화재보험주식회사	일반사단법인 일본손해보험협회 손포 ADR 센터(지정 분쟁해결기관)
<p>보험에 관한 의견 · 상담은 (인수 보험회사) 도쿄해상일동화재보험 주식회사(간사 보험회사) 공무제2부 공무제1과 우편번호 102-8014 도쿄도 지요다쿠 산방쵸 6번지 4 03-3515-4133</p> <p>사고의 연락 · 상담은 도쿄해상일동 학교보험코너</p> <p> 0120-868-066 (수신자 부담 전화) ※ 학교보험코너에 연결되며, 학교별로 담당학교보험코너에서 연락을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접수시간 : 평일 9:00 ~ 17:00 (토 · 일 · 공휴일 · 연말연시는 제외)</p>	<p>도쿄해상일동화재보험(주)는 보험업법에 근거해 금융청 장관의 지정을 받은 지정 분쟁해결 기관인 일반사단법인 일본손해보험협회와 수속실시 기본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p> <p>도쿄해상일동화재보험(주)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는 동 협회에 해결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동 협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https://www.sonpo.or.jp/)</p> <p style="text-align: center;"> 0570-022808 (통화료 유료)</p> <p>PHS · IP 전화는 03-4332-5241 을 이용하십시오. 접수 시간 : 평일 오전 9시 15분 ~ 오후 5시 (토 · 일 · 공휴일 · 연말연시는 제외)</p>

Ⅵ. 보험금 청구처 (도쿄해상일동학교보험코너)

도쿄해상일동사업부	사업장 소재지
쿄해상일동화재보험 주식회사 웰니스 보험금 서포트부 상해보험 서포트실 상해 보험 서포트 제3팀(학교보험코너) 수신자 부담 전화 0120-868-066	(우)105-8551 도쿄도 미나토구 니시신바시 3-9-4 도라노몬 도쿄해상일동 빌딩

Ⅶ. 기타

(인수보험회사가 경영파탄한 경우 등의 취급에 대해)

보험회사의 경영이 파탄한 경우 등에는 보험금, 반환금 등의 지급이 일정기간 동결되거나, 금액이 삭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인수보험회사의 경영이 파탄하고, 계약자가 개인, 혹은 [소규모법인] (파탄 시에 상시사용 종업원 등의 수가 20 인이하의 일본법인, 외국법인 (*1) 또는 맨션관리조합인 경우에, 본 보험은 [손해보험계약자보험기구] 의 보상대상이 되며, 보험금, 반환금 등은 원칙상 80% (파탄보험회사의 지급정지로부터 3 개월간 경과하기까지 발생한 보험사고에 관한 보험금에 대해서는 100%) 까지 보상됩니다. (보험계약자가 개인 등 이외의 자인 보험계약이라 하더라도 그 피보험자인 개인 등이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부담해야하는 경우라 한다면 해당피보험자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가보상의 대상이 됩니다.

(*1) 외국법인에 대해서는 일본의 영업장 등이 체결한 계약에 한합니다.

(개인정보의 취급에 대해)

보험 계약자인 공익재단법인 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는 본 계약과 관련된 가입자의 성명·학적번호·입금일 등의 개인정보를 인수보험회사에 제공합니다. 인수보험회사 및 인수보험회사 그룹 각사는 본 계약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험인수 판단, 본 계약의 관리와 이행, 부대 서비스 제공, 타 보험이나 금융상품 등 각종 상품·서비스 안내 및 제공, 설문조사 등을 위해 이용하고 아래 ①~⑥의 경우에도 개인정보가 이용·제공될 수 있습니다. 또 보건의료 등 특별한 비공개 정보(민감 정보)의 이용 목적은 보험업법시행규칙에 따라 업무의 적절한 운영 확보,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 ① 본 계약에 관한 개인정보 이용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업무위탁처(보험대리점 포함), 보험중개인, 의료기관, 보험금 청구·지급에 관한 관계처, 금융기관 등에 제공하는 경우
- ② 계약 체결, 보험금 지급 등을 판단할 때 참고로 타 보험회사, 일반사단법인 일본손해보험협회 등과 공동으로 이용하는 경우
- ③ 도쿄해상일동화재보험 주식회사와 도쿄해상그룹 각사 또는 도쿄해상일동화재보험 주식회사의 제휴 기업 간의 상품·서비스 제공 및 안내를 위해 공동으로 이용하는 경우
- ④ 재보험계약 체결, 갱신·관리, 재보험금 지급 등에 이용하기 위해 재보험 인수회사 등에 제공하는 경우
- ⑤ 질권, 저당권 등 담보권자의 담보권 설정에 관한 사무 절차 및 담보권 관리·행사를 위해 그 담보권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 ⑥ 갱신 계약에 관한 보험 인수의 판단 등, 계약의 안정적인 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보험 대상자의 보험금 청구 정보 등(과거의 정보 포함)을 계약자 및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자세한 내용은 도쿄해상일동화재보험 주식회사 홈페이지와 타 인수보험회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도쿄해상일동화재보험(주) www.tokiomarine-nichido.co.jp/

개인정보는 소속 학교가 작성한 가입자 명부를 공익재단법인 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가 도쿄해상일동화재보험(주)에 제출함으로써 제공됩니다. 이 취급 방식에 동의하지 않으면 바로 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에 연락해 주십시오.(동의하지 않으면 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 중대 사유로 인한 해제 >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도쿄해상일동화재보험(주)는 가입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부 또는 일부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피보험자나 보험금 수취인이 도쿄해상일동화재보험(주)로부터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손해 등을 발생시킨 경우
- 피보험자나 보험금 수취인이 폭력단 관계자, 기타 반사회적 세력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 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청구에 관해 피보험자나 보험금 수취인에게 사기 행위가 있었던 경우 등

만약 사고를
일으켰다면...

보험금 청구 절차에 대해



아래 순서로 수속하세요!

- 사고 발생을 보험회사(도쿄해상일동) 학교보험코너
(0120-868-066)에 전화로 연락

▼

- 학교에 사고 발생을 보고

▼

- 사진 및 수리 내역 등 도쿄해상일동이 지정한 증빙
서류를 준비

▼

- 학교에서 보험금 청구서를 입수

▼

- 보험금 청구서(학교에서 증명란에 기재한 것)를 도
쿄해상일동 학교보험코너(도쿄)에 송부

※수신처는 P19를 참고하십시오.

- 도쿄해상일동이 보험금을 지급